

---

제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

일시 1958년7월3일(단기4291년) 상오10시35분

---

의사일정

1. 제6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관한건
4. 동사무소대지및건물매수에관한건
5. 독립문국민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에관한건
6. 창덕여자고등학교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7. 가교사건물철거처분에관한건
8. 귀속재산매수에관한건

---

부의된안건

1. 제6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성암동유령인구기재관계관과면고발에관한안건 ... 59面

---

(10시 35분 개의)

○의장 박명준; 지금부터 출석의원 30인으로 제6차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5차회의록 낭독하겠습니다.

- 
1. 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전회 회의록 낭독중에 착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이응린의원 방동석의원  
이 올시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올시다.

먼저 사무처보고가 있겠습니다.

---

## 2. 보고사항

○간사장 김형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처분 요령개정안 제출에 관한 건  
6월28일자로 이응린의원외 17분으로 부터 안건을 제출해  
왔습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학우 의원;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 말씀드려야하겠습니다.

이번 23차 임시회의에 소집 목적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추  
가경정예산안과 4290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으로 소집이  
요원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 각 의원앞에 유인 배부된 의사일정을 본다고하면은  
완전히 소집목적에 어긋나는 의사일정을 유인해서 배부한것  
으로 보고있습니다.

소집의 주목적이 4290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라고 하면  
은 어디까지나 주목적이 그안건을 처리한후에 이안건이 상정  
되어야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바입니다.

이 90년도 결산승인에 관한 의제가 완전히 오늘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한 가닥의 의심을 아ни가질수 없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취급에대한 신중과 공정성을 기해 주기 바라는데서 한마디 말씀드려드립니다.

6월30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줄기찬 비로 인해서 본의원 출석구인 체신부 자리에 자리잡고있던 402세대의 판자집이 작년 9월달 자진 철거해서 성동구 군자동으로 이주했던것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고 믿읍니다. 마는 군자동 일대가 침수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어저께 아침 본의원과 최인호의원이 현장에를 달려가보았읍니다.

현장에 달려가 보았드니 신문기사 그대로 목불인견의 참상이었든것입니다.

조그마한 오리목을 가지고 천막을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와서 사정없이 휩쓸었기때문에 천막이 쓰러지고 천막안에 지어노았던 불과 한간밖에 되지않는 온돌방이 전부 침수되어서 그들이 쓰던 가장집기라고 하는것은 여지없이 피해를 입었던것입니다.

이 침수의 원인이 서울시 자체가 판자집 철거민들에 대한 정책을 지나치게 등한이 했다는데 기인이되고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이 지역 자체가 성동구 출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시겠지 마는 삼태기처럼 생겼어요. 물이들어오면 나갈 구멍이 없다 그말이에요.

이런데에다가 400여 세대의 천막집을 몰아넣고 금년 4월달에 잠시 내린 봄비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수당했을때에 소방차 두대가 동원이 되어서 배수작업을 했다 그것이에요.

이 사실을 집행부가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본회의석상에서 최인호의원이 건설국장에게 배수로를 살릴수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는것을 요청한것을 기억하고있습니다.

우기를 앞둔 서울시가 400여세대의 피난민이 입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 침수의 대상이 된다고하는것을 엄연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배수에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시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건설국장은 좀더 성의있는 건설행정을 해주어야만 되겠고 시민의 생명 재산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것을 뉘우치고 알아야할것입니다.

이렇게 침수된 지역에 어저께 긴급으로서 사회국에서 구호양곡을 한추력을 내보내고 피해입은 주민들에게는 인근에 있는 교회 또는 원주민들에게 부탁을해서 소개를 시켜서 인명의 피해는 과히 없습니다마는 환자가 발생된것이 많아서 어저께 방역반을 동원을 시켜서 소독을하고 환자를 두명 자혜병원에 입원시키고 즉시 이동 진료반이 와서 환자 치료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다가 이대로 철거민들을 둔다고하는것은 그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좋은데로 옮겨서 평안하게 살수있는 지역이 없는가하고 어저께 물색을 했드니 마침 답십리동 240번지 사유지가 1500평가량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즉시 이것을 그들에게 대여할수있는 비난민을이끌어서 금명간 이들이 높은 지대로 이전하는 조치를 받기로 참고 삼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서울시가 사회복지사업에 다가 전체 예산의 15

푸로를 투자하고있는 이 현실은 집행부당국에 그만큼 사회복지사업에 중대성을 깨닫고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보고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어린아이를 갖다가 버리는 아이의 수가 매달 120명 내지 130명이라고하는 커다란 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만이 영아 젖 먹이 한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길거리에 갖다버린것이 80명 두살에서 여섯살까지가 50명 이래서 130명이라는 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자는 매달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자라고 집행부 당국자는 말하고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버림을 받고 유일한 구호의 대상자인 구호체가 서울시청밖에는 없다 그말에요.

이 젖 먹이 어린아이들이 서울시청에 수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네시간 내지 다섯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하는 가운데에 절명하는 아이수가 많다는 이 사실을 아는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것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15푸로라는 막대한 예산소비하면서까지 시민 영아원 하나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스럽다는데에 결론을 아나가질수없는것입니다.

또 사직공원 앞에있는 중앙아동 보호소가 불원한 장래에 다른데로 완전히 이동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방 주민들이나 본의원 또는 서울시 사회사업에 관심

을 가지고있는 분들은 이 영아사업을 좀더 획기적으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사직공원옆에있는 아동보호소 자리로 사무소를 옮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창립이후에 서울시민의 복지를 가져왔고 그것의 운영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영아원에는 등한히하고 일시 위안을 할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서울시의 한 단체에 권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시비를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킨다고 하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없는 일이라고 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시는 시립교향악단을 주택지 근방에다가 해놓고 소란스러운 음악을 울리는것 보다는 사회복지 사업에 좀더 기여할수있는 영아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아 사업에 획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갑론을박 끝에 궤도사업청 관리권문제가 폐기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이 궤도사업청 관리권을 포기에 대한 찬성을 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관심을 아니가질수 없습니다.

수자적으로 결정되는것이 우리들의 원칙으로 되어있는 줄알기때문에 폐기된것에 대한 이론은 말씀드리지않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하는것을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2억2천만원이라는 절대적인 손해를보고있는 궤도사업청

을 다시 사업을 계속시킨다고하면은 서울시가 이 이상 더 수습을 할수없는 사태에 노여있기때문에 관리권 포기를 요청해 온것이라 말어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더 궤도사업청을 운영한다고해서 이 적자를 보충할수있는 길이 있느냐 하면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누적되면 되었지 이 적자를 소멸시키는 방향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어저께 어느의원 말씀도 현재 수개월전에 반영이 되고있다 이러한얘기를 했어요.

만일 몇일이후라도 이 궤도사업청이 운수나쁘게 인명에 손실을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느냐 말이에요.

서울시의회가 집행부가 관리권을 포기하겠다는것을 운영하도록 해주어가지고 다음에오는 적자 누적과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책임은 응당 서울시의회가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기때문에…….

(「그것은 보고사항이요」 하는이 있음)

보고사항에 할수있는 얘기입니다.

사무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궤도사업청 관리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전입금의 조처도 안해주고 대안도내놓지않고 그냥 그대로 현상대로 이것을 운영해라 하는것은 서울시가 시비를 더쓰는 낭비해라 하는데 지나지않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이번 회기에는 여기에대한 대안이 나오지않았읍니다.

건설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차기회의에 내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

는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김준식의원 보고해주시겠습니까.

○김준식 의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각부문에 행정이 부패했다.

다 그러는데 문교행정만은 그래도들 부패했다고 이렇게 현 사회에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막에 서울특별시내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루 말할수없는 부패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있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신문에 각학교에대한 부정사건이 많이나고 또한 그외에 각학교로부터 각학부형들에게 말할수없는 고통을 주면서 그 학부형들이 심히 말도 못해가면서 속으로 안타깝게 울고있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는것을 여러분이 잘아실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국민학교에 지금 중고등학교의 납입금 문제올시다.

이 납입금 문제라는것은 1기가 4월 5월 6월 그것이 1기분이고 2기라는것은 7 8 9월 3달이 2기분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시내의 중고등학교에서 2기분 7 8 9월을 7월 3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7월4일부터 시험보는 시험을 중지시킨다.

또한 출석할지라도 결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그외에 성적을 깎는다 하는 이러한 부패한 교육행정을 하고있는 비교육적인 학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두학교가 있는것이 아니라 시내에 중고등학교 아마 대부분이 이러한 처사를하고있는데 이 교육을 맡어가지고 교육행정을 맡어보는 교육위원회로서는 여기에대한



무슨 조치가 없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장과 과장에게 얘기를했읍니다마는 정식으로 오늘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학교 이름까지 말씀드리겠읍니다.

협성여자 중학교에 임모라는 여교원이 그 학부형이 2기분에대한것을 연기하러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교 방침은 절대로 7월3일까지 내지않으면 시험을 안보입니다.

하면서 또 하는 말이 무엇인고하니 납입금을 못내고 돈이 없는사람이 어찌 아동들을 공부시킬려고 합니까? 그것은 허영이 올시다.

이러한 언사를 쓰는 교직원이 있드라 말씀에요.

그러면 이러한 교직원을 학교에 두어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교육을 시키겠느냐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비교육적인 교원 이학교 책임자에대해서 교육위원회로서는 어떠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로다가 거기에대한것을 처리할 각오를가지고있읍니다.

이상이 올시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박수형의원 보고해주시겠읍니다.

○박수형 의원; 건설국 책임자가 만나와서 이것이 보고를 드리는것이 무엇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보고몇가지를 드리겠읍니다.

어떻게된 연유인지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마는 서울시 시의원 47개 선거구 단위로 불적에 암만 선의로 생각해보아도 제 출신구가 2년동안에 시가 투입하여서 공사한 액수가 제일 적은것같읍니다.

해서 이사람이 그시민의 요청이나 또한 그여론으로서 본의

원이 그것은 집행부에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역시 한편 제 자신이 가지고있는 성격의 결함으로 말미아 마서 한두번 얘기해보았다가 듣지않으면 역시 포기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우물하나 파달라고 하느니 목교하나 놔달라고 하느니 2년 줄라서 우물하나보았다 말이에요.

그랬드니 이 예산은 15만7천환인데 우물을 해노은 후에 근 한달반이나 여기에다가 놓니 안놓니 하다가는후에 그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고하니 여보 당신들이 시의원 노릇을 하면서 부정공무원 하나 처치못하시요 말이에요.

그것은 또 무어요. 우물 하나 놓는데 무슨 말이 많소. 주민들이 하는얘기입니다.

예산을보니까 15만7천환이라고 해서 이제 실지로 우물을 파는데 인부하고 자재하고 이것을 계산하니까 7만2천환밖에 되지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노까」 하고 工錢을 계산해보니까 7만환 내외라 말이에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15만7천환을 세워놓고 우물하나 파는데 있어가지고는 실지 예산에 영달액의 5할밖에 되지않으니 욕을먹게 되어있다 말씀이예요.

또한가지 2년간 아웅 다웅 싸워서 목교하나 놔달라고해서 요몇일전에 겨우났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85만환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사람들에게 다리를 놔주니 반갑게 생각합니다마는 또와서 도둑 놈을 처치못해주시요.

암만 계산해보아도 37만환밖에 안들었소.

그러니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1년동안이나 당신한테 부탁했어요.

이것이 85만환자리 다리를 놓는다는것이 37만환밖에 안들었소. 그러면 이남어지 돈을 누가 먹었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자 이러니 지금까지는 이 건설국장한테고 제가 지나친 공격도 지양했고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있으면 말로 서로 잘 해서 이것을 시정시키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의 위신이 추락 안되는 방향으로 시의원 노릇을 해보자고 무던히 애를 써보았읍니다마는 오늘날 암만 보아도 우리 건설국의 건설행정의 가지가지를 미루어 살펴볼적에 암만 보아도 건설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정실에 흐르는 면이 있는것같고 지역적으로 차별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우리 종로구는 어느 구역보다도 좀 정돈되어있는것 같기때문에 반드시 타구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구역이예산에 결정되었다고 하게 되면 다못 그 절반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겨우 우물하나 다리 하나 놓은것이 얼굴에 아주 미친놈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감독을 못하고 당신들도 같은 나쁜 놈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공사가 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시민은 세금을 낸다 이것을 가지고 1천만환자리 공사가 실지로는 3백만환이나 4백만환밖에 안되니 이것은 어떤 일이나 이것이 의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역시 그와같이 진행되고있다 말이에요.

또한가지 건설국장에 부탁할것은 예산상에 책정이 되었으면 적으나 많으나 이것은 해야 될것이라고 말씀이에요.

어떤사람은 밤낮 아웅 다웅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면 해주고 한두번 말해서 안되면 고만두는데는 집어치우고 이따위 수작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건설국장께 말씀드릴것은 이 공로행정이 엉망진창이란 말씀이에요.

적어도 빠스나 합승들에 있어가지고 그공로를 인정해준다면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중요도로 간선도로에 속하는것입니다.

용산에 선린상업학교 앞 골목길에 이길에 빠-스가 운행되고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에 빠-스가 이골목길로 다녀요 하니 당신은 무어요. 아 내가 좀 알아볼려고 했어요.

여보 서울시에서 공로허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공로행정을 이런데에 허가를 해주는법이 어디에 있느냐 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졸렬한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떠한 업자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어떠한 허가를 얻기 위해 사바사바해서 해준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당장 시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김수길의원이 말씀 했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 당국에 한가지 부탁한것은 이것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이따위 수작을 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이번 어느의원도 말한바와 같이 돈벌기 위한것인지 잡당인지 교육위원회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명백히 교육법의 의무교육이라고 해놓고 일정한 아동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해놓고 우리나라의 실정이니 무어니 무어니 해가지고 기성회비니 사친회비니 징수하는것은 기성 사실로 되어있읍니다마는 요새 2, 3일전에 교육감이 신문사에 담화를 발표하기를 각학교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데 징수하자면 전체 학생의 극빈자 2할만 감하기로하고 나머지 8할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무제한이다.

그러니 아까 말씀대로 공납금도 내라 이제 학교를 증설하는데 어떤 학생은 10만원 내라 30만원내라 이것 영리기관이요 무어요 말이에요.

이 모양대로 밤낮 요모양 요꼴이나 그것이에요. 잘들어가지고 제말이 그런가 아닌가 이것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교육자라고 하게되면 교육행정가라고하게되면 어떤 공무원보다 특히나 이런 물질적인 문제에대해서는 일반사회에서나 학부모들에게 욕을 먹을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무조건하고 부형이나 아동들에게 기성회비를 너는 5만원내라 너는 10만원내라 그랬다가 만약에 못 가져오는 그 아동들의 심정을 생각해보아라 말이에요.

인제는 무엇을 가져오라 인제는 무엇무엇을 가져오라 인제는 무엇무엇을 가져오라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창문제입니다.

이 사창문제에대해서는 나는 허시장한테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인제는 이시간부터는 취임초에 나는 불편부당으로  
서 시민의 심부름만 하겠다.

명랑한 시정을 해보겠다. 하나 한것 없어요. 무엇하나 제데  
로 한것 없다 말어요.

당신네들이 해보자한다면 할것이지 자기 의향대로 해보게  
되면 목아지가 떠러질가 보아서 우물주물하고 무엇하나 한것  
없다말이에요.

도하 각신문이 사창문제에 대해서 떠들고있는데 그러나 서  
울특별시장으로서 말이에요. 무엇하나 여기에대한 대책이라도  
시기적으로 내노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된일이에요?

도심지에서 사창 쫓아보낸것은 좋습니다마는 외곽으로 들  
어가서 사창이 단속이 아니라 만연이 된다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꼬물꼬물하고 보고만 있지말고 적  
어도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데에서 발생한일이니 시장으로서  
는 전문가를 붙여서 회의를 열어서 사창을 단속하는것이 원  
칙적으로 좋다.

그러면 단속한후에 이사람들을 어떻게할것이나 집단적으로  
수용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될것이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쫓아내버리고 가두어 버  
리고 이것도 문제가 안되는것입니다.

사창을 단속한다는 원칙은 좋습니다마는 형무소로 보내서  
징역 4개월이든지 살게한다는 이것도 안되는것 이것도 안되  
는것이에요.

사창단속에대한것은 벌써 4278년 과도정부 법령제75호로  
서 폐지된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그러한일이 없다가 이

제와서 그사람들을 집어넣을수가있어요?

집어넣을수가 있다고할것같으면 오히려 관이 잡혀들어간다 말예요.

그러니 이런문제도 소홀히 내버려두고 보사부나 내무부당국이 하는일은 속수무책으로서 가만히 있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또한가지는 여기에 경찰국장에 말씀을하겠는데 경찰에서 요새 자가용차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를 폐차처분을 시켜버린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안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졸렬한 행위는 없다 말입니다.

적어도 사유재산으로서 자가용차가 하나에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인 자가용차가 한번 속도위반을하든가 인원초과를 하든가 한경우에 따라서 운전수의 실수로 영업행위를 했다기로서니 한번 정도에 실수를가지고 개인에 백만원 이상가는 차량을 폐차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은 안된다 말씀입니다.

명확한 재산권 침해라 말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칙을 만드러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번이나 두번이나 몇번까지 이런 행위를한다고하면 단한번이라도 방법을 강구해야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폐차처분시켜서 이사람들이 막말로 돈보따리를 가지고 경찰서로 드러다니면서 야단법석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폐차처분을 했으면 복귀시키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도루 내준다 말입니다.

이따위 행정이 어디있느냐말입니다.

집행부는 시의원들이 떠들기전에 모든행정에 좀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허심탄회하게 해주어야만 될것입니다.

이다섯가지를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것을 일정한 기한까지 하나의 그을을 확립해서 그러한 비난이 없도록 하지않으면 그때는 그때로서에 책임을 묻기로하고 저희보고는 이로서 끝이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具喆會의원 간단한보고를해주세요.

○具喆會 의원; 이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및 기타 선거간섭사건에 조사보고서를 읽어드리기전에 이조사서 내용에있어서 푸린트 할때에 오식 오기같은것이 있는것입니다.

여러의원님 미리 양해해주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성암동을 위시한 기타 제4대 민의원선거 그후에 지방의원 시의원 보궐선거 또 동장선거 각급 선거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섯명에 의원이 의회에 명을받아 조사하게되었는데 우리조사의원 회합석상에서 이원옥의원을 반장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로해서 또 반면 조사대상을 한반으로 해서는 곤란하니까 두반으로 논아서 한반은 성암동 서대문구를 담당하기로했고 또한반은 영등포지구 선거관계를 담당조사하기로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이원옥의원은 반장으로 피선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는데 도중에 사표를 제출했든것입니다.

이 조사서에 서기 윤규현 최동선이라고 적여있는데 이 「미스푸린트」 올시다.

조사는 실지 같이 같았읍니다마는 조사관계로 올릴수 없는 의원이 아닌 까닭에 이것이 미스 푸린트 입니다.

실지는 같이가서 조사했읍니다마는 조사위원이 았인까닭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또 서대문 쫄내에 있어서는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기재되지않은 그외에 많은 행정적인 결함이있고 부정이있으나 시일에 제한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다만 몇군데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드립니다.

서대문 록본동 투표구에 희망의 마음이라는 걸인수용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200명에 동적부 선거인 명부를 기재하고 있는데 당시에 각후보자 사무장들이 실지 조사한 결과 200명 중에 70여명의 유령이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출장소 또 시직 원과 희망의마음 책임자도 이 사실을 피차간에 사실을 규명 하고 유령이라고 하는것을 확실히 확인했으나 그후에 확실한 처리답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또 현저 2동투표소에는 20여명이 동대문방면에서 와서 투표행편을 했는데 수차 반복해서…… 한번 한것 아니라 그 돌아온 20명이 그다음에는 모자를 쓰고가고 또는 벗고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여러차례 현저동 투표구에서 투표를한 것입니다.

여기에있어서 여러가지 관계상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홍은동관계에 있어서 참관인이 압력에 의해서 모후보자에 참관인이 참관을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사실 여기에는 무더기 표를 넣는것을 보았다고 이런 소리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참관인이 참관하지 못하고 기권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대라면 증거가 여러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곤란합니다.

서대문 성암동을 위시해서 서대문 을구 관계에있어서는 사실 또는 그이상의 의혹이 허다한 이런 점을 알면서도 시간의 제한과 여러의원님앞에 진상을 밝혀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성암동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 론

금반 5·2총선거에있어서 각종부정사건이 허다히 발생하였음은 국가장래 발전을 조해한것이라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케하고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한 것을 일대유감지사라 아니할수 없거니와 수도 서울에서 전례 없는 각급공무원들의 ○부근성의 소치로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선거간섭과 공문서 위조및 허위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유령인구를 2789명식이나 발생케한 사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선거간섭등 부정부당한 처사를 자행한것으로 보아 국가장래를 위하고 민주발전을 조속히 이룩하기 위해서 본사건에 관련자들을 엄단하여 관기를 확립하고 여사한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것이다.

특기할것은 허공한 황무지에 거주하는양 기류동적부등의작성과 선거인명부의기입 투표케 함으로 유령투표하는 세인의 의혹을 자아내게한 근원이 관계공무원에 있고 기수 2789명에 기류등재절차도 대표라는 일개인이 제출했고 또한 일개인을 상대로 제출접수 하였고 일개인의 屈由로서 전기한 막대한 수의인원을 부실하게한것은 의식적으로 조작을 한것이니 증거나 절차가 정연할수가없으며 현지증거가 있을 도리가 없는 것이나 하기조사서에 명기되어있음.

## 서 대 문

### 1. 성암동사건

반공청년 부락건립을 단기4290년 말경을 기하여 급작스러이 진행된문제와 동부락건립추진을 계기하여 주택이 건립되기전당시 (12월5일부터동월27일까지) 천막3동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일간에 2,789명이란 인원이 격증

하는 사실의 진상을 파악치 않음으로써 사건의 근원이 되어 유령이되는데 대하여 구청장은 모든점은 시장에게 들으면 시장 지시에 응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인 것이며

총무과장 (이갑희)은 성암동에 반공청년주택이 건립된줄 알고 기외에는 출장소관내이고로 자기는모른다고하나 총무과에는 월례상통계보고를 접수함으로 인구이동동태와 특히 반공청년주택이 선거즉전에 건립되게됨을 기회로 황무지에 2,789명이 일시에 격증한다는것이 허위라는것은 현지를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을 모른다는 답변은 어불성설이며 사건이 표면화되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직무에태만하고 규율에위배하고 있고 총무계장 역시 선거인명부에 유령인원이라는 것을 알고 기재한것이며

본청시정과장과 동반현지조사까지하여 허위라는것을 알면서도 동반현지조사까지하여 허위라는것을 알면서도 공문서정리를 하지않고 행사제한점으로 보나 의식적인 조작을 방조한 결과의 책임을면할 도리가 없는것이며 서대문구청장이하관계과계장은 행정면적인 사건의 책임을 면치못할것임.

은평출장소장 이한정 역시조사통고를받고도 부재하여 조사를 기피하였음은 유감으로 생각지않을수없습니다.

뿐만아니라 호적병무계장 윤은 2,789명분에 기류계서를 2통씩 접수하여 1통은 전기류지에 발송하고 1통은 본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출장소에 보관한것은 1통도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기류절차 세칙제26조에 의하여 기류에 관한 신고서 기타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을 당해년도의 익년으로부터 2년으로한다.

그러나 본적이없는자및 본적이분명하지 아니한자에관한 서류는 그자에관한 기류부의기재를 말소할때까지 보존한다.

참고 이북계서는 본적이 분명하지아니한자로 취급하고있음.

2. 4288년6월19일자 호적사무질의문 과거 접수한 38이북 기류자에대한 기류계서는 현수복지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할것인가?

답 송부하여야함.

라고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2789명중에는 38이북에 본적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9할이나 되는데 그사람들의 계서1통을 출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통도없다는것은 고의가 아닐수없습니다.

또 전기류지로 1통을 발송하였다는것도 명확치 않으며 증거로서는 발송대장에 명시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아 의식적인 조작이 확실하며 은평출장소장 이한정은 여사한 불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한공리일것이요 알고서도 고의로 범하였다면 부정공무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한정이가 영등포시립병원 서무과장으로 영전시킨 처사로보아 본청에대하여서도 의혹감이 불무한 것이다.

시민증 발급대장 (경유) 을보면 동에는 반공부락에서 시민증발급신청경유부에 23명밖에 없는데 출장소대장에는 15명이나 기재된것으로 보아 전부 상부로부터의 조작으로 보지않을 수없음.

또한 서대문경찰서 사찰계에서 조사한것은 153명으로서 3명의 차증이 유한데 증명서류는 완비되어있으나 날인한것을 보면 본서에 안찍고 부분에만 찍거나 원본에찍고 부분에는 안찍은것등등 증명서취급에 치밀을 기하는 경찰사무로서 정상적이라고 볼수없으며 특히 제출자가 반공대표라는 오광목 씨 일개인이 일괄 제출했고 증서인수자도 전기대표 일개인이 라는등 제점을 정확히 규명하자면 의혹되는점이 허다함.

## 성 암 동 유 령 인 구 관 계

단기4290년말에 반공청년정착 주택건설계획지인 서대문구 성암동산1번지에는 대천막3동에 약100명 (단기4290년12월 중순경) 밖에 반공청년이 거주치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성암동장 권영덕 사무장 구태성서기 허계 3인은 반공청년대 표 오광목씨 요청에 의하여 단기4290년12월5일부터 동월27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집 1동도없는 산마루터를 거주소로 무려 2789명이 앞으로 거주할것이라는 가상적인 예측으로 기류계서를 접수하였으며 그기류계도 각 개인이 제출한것이 아니라 오광목씨가 2 3차에 巨하여 일괄제출된것이며 동적부 역시 2789명이 기재정리되어있고 그인원중에는 부녀자가 530명이나 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아 전원이 반공청년이 아니라는 확증이 공문서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오광목씨가 반공청년대표라는것을 무엇으로 알었느냐는 질문에 동사무장 구태성과 서기 허계는 명함과 신분증을보고 알었을뿐 자세한것은 알도리가 없는 處地分外라 여타는 서류에 기재된 수자만을 알뿐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할뿐이였습니다.

무거주자인줄을 인지한 공무원이 1私人에 요청에 못이겨서 기류계부와 동적부에 기재하였다는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치국가에서는 있을수없는 처사라고 사료되며 반공청년이라고 하여서 특수취급과 특별대우를 베풀것이라고 변명을하나 반공청년에게 특수취급과 특별대우를 베풀것을 책하는것이 아니고 반공청년들을 특별대우하는점은 조사의원들도 쌍수로 찬양하나 공무원으로서 표창에 대상이 될려니와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위임된 직권내에서 취해갈 문제이지 그 영역을 넘는다든지 또는 허위를 조작할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류계에도 세대주1명에 100여명식이나 동거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예는 기류사상 처음보는 행정적결함이라기 보다는 조작행정이라는 것이 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동장 권영덕씨는 의회에서 조사차 출장한다는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하였다는 처사는 의식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며 조사를거부하고 유형무형으로 유령인구에 증거를 煙滅시키려는 행위라 간주됩니다.

기류목적이 앞으로 영주와 정착을 위하고 시민증을 교부받기 위한것이니 우선 기류계를 접수하여달라는 오광직 씨에 요청으로 기류계서를 접수하였다고 동사무장 구태성 서기 허계는 횡설수설하나 이것은 요청이라고 해서 접수할수도 없는 일이며 또 그것은 일종에 구실에 불과한것이 증거로서는 기류계출자 2789명중 시민증 교부대장을 경유한자는 불과 최윤식 외22명밖에 없는 사실로 보아도 확실히 구실이 증명됩니다.

현지를 답사하며 보았으나 현재에도 현주자는 반공청년과 그동거인을 합하여 148명이 거주하고있는 현실이며 현재에는 주택이 건립되어있는데도 불과 148명밖에 거주치않고 있는데 천막사3동에 2789명이 거주하였다는것은 삼척동자라도 믿지 않을것입니다.

단기4291년1월부터 6월까지의 월말인구이동상주자 보고에도 2789명이 상주한다고 사실과 상위되는허위보고를 하고있는 실정으로 보아 과실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제증거로보아 의식적인 조작을 위한 유령인구가 틀림없을것입니다.

선거인명부작성에 있어서도 선거법18조에 명시되어있고 또 상부에 지시에도 기구역내에 3월1일현재 2개월이상 거주자로

서 계속거주에 유무를 실지동적부 기류부등에 의하여 조사하  
되 차를 각국민반별로 실지 대사를 행하고 누락중복 또는 오  
기의 유무를 확인하고 동확인된 조사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여 최후정비하여 사무취급상 소홀히함이 없도록하라는 별  
지와 여한 통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 권영덕 구태성  
서기 허계는 반공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거주할것이라는 가상  
적인 생각으로 실재거주치 않고 있다는것을 자신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법과규칙과 지시를 도외시하고 총  
인구2789명중 유권자275명을 선거인명부에 기재작성한것 역  
시 유령인명부이고 통 반장에 증명으로만 공문서를 취급하고  
있으나 통 반장 역시 동회에서 모르는 가상의 인물이 등  
장이 되어 있는것으로보아 계획적인 처사로 봅니다.

기류절차(수속)세칙

제26조 기류에관한신고서 기타부속서류의보존기한을 당해  
년도의 익년으로부터 2년으로한다.

그러나 본적이 없는자및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자에관한  
서류는 그자에관한 기류부의 기재를 말소할때까지 보존한다.

참고 이북계서는 본적이 분명하지아니한자로 취급하고 있  
음.

2 4288년6월19일자 호적사무질의문 과거접수한 38이북 기  
류자에대한 기류계서는 현수복지구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인가.

답 송부하여야함.

서종제 호

단기4291년2월12일

서대문구청장

은평출장소장 각동장귀하

## 민의원의원 선거권자조사서작성에관한건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 매년3월1일 현재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바 수제의 선거권자 조사서를 작성비치하여 선거인명부 작성당시에는 틀림없이 기재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옵기 다음사항을 미리 시달하오니 특히 유의하고 해조사서를 좌기에의하여 정밀히작성하시얏.

추신 본조사서는 시일관계로 빨리 작성되어야 함으로 조심하여 틀리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할것을 첨신함.

기

1. 조사대상자는 단기4291년3월1일현재로 그구역안에 60일이상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연령이 만21세이상 (단기4270년5월1일 (일전) 출생자)의 (내국인) 남녀 전원으로함.

2. 3월1일현재로 60일이상 (4290년12월31일이전 거주자) 당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사람이 계속하여 현재 살고있는지 실지 동적부와 기류부등을 대조하여 명확한 증빙성있는 공부에 의하여 조사되어야함.

3. 출생년월일은 호적부 기류등공부상에 나타날수있도록 증빙이 되어야하며 국적이 없는가는 호적부 등제 사실에 의하여 밝혀져야함.

4. 민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및 제14조의 해당사실 유무는 금치산자명부 범죄인명부 기타의 공부와 법원의 판결통지서 등에 의하여 정확히 대사하여야함.

5. 본조사서는 3월7일까지 정비작성 하여야함.

6. 3월9일까지는 작성된 선거권자 조사서에 의하여 각국민 반별로 실지대사를 행하고 누락 중복 또는 잘못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동 확인된 조사서를 전면적으로 관계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그마지막 정비를할것.



7. 실지대사는 다음방식으로 하여야함.

가 각국민반장 입회하에 매세대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를 실시케할것.

나 실지대사는 조사서 전면에 걸쳐 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잘 밝혀야함.

다 실지대사의 결과 조사서의 오기 누락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음대로 고치지말고 범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동적부 기타 공부의 수정절차를 곧 밟도록할것.

라 동장은 전항의 사실을 살핀후 이 조사서를 꼭 고쳐야 할곳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 기재사실을 고치고 도장을 찍어야함.

마 조사서는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책임자가 잘 간수하고 쓸데없이 외부에 내어가거나 함부로 보여주지말것.

사 조사서 각장마다 상단부에 면수를 기입코 매장마다 계인을 찍을것.

아 완성된 조사서 말미에는 완성된 자격구분에 따라 유자격및 무자격인원과 총인구수를 필히 기록하고 3월10일까지 구에 지참하여 검사확인을 받을것.

8. 동장은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조사서 완성사항을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3월10일까지 구청에 필착토록 무위 보고할것.

9. 구청및 본청에서는 본사무 추진상황의 지도와 감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수시로 개별 또는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것이오니 사무 취급에 소홀함이 없도록할것.

금화국민학교관계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써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에 대하여 국가장래를

위하여 유감이라 아니할수없는 불미사인것입니다.

지방은 차치하고라도 수도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우수한 금화국민학교교장(최병용)과 동교교감(조종하)이 주동이되어 전교원내지는 학생및 학부형들간에 이르기까지도 공사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기후 사회의 폭로와 여론이 비등하여 조사를 하게되니 사실을 부인하려고 노력을하며 證據陰弊에 吸吸하여 공한 답변으로 회피의 방법을 쓰나 여러 직원들의 증언및 인기투표와 주석 공사석에서 운동한사실은 역력한것이므로 기책임을 면할 도리가없는 불순한 책임자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사한 장본인을 삼광국민학교 교장으로 영전시켜 노았으며 본건조사에 대하여서도 본조사반으로서 본건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3차에 걸쳐서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육이란 이유로 차에 불응하여오던중 6월21일에야 조사에 응하긴 하였으나 기답변에있어서 공적 운동은 한바 없다고 부인일관이고 사적으로는 한것같은 기억이 있는것 같다라는 불성의한 태도이였으며 교감 교무주임 교원박동훈(선생)들은 교육자적심리에서 이탈한 태도나 언동이 불손하며 역시 교장 교감에 의한 암시와 지시를 시인하였으며 기외 교원최갑수의 증언등으로 확실히 선거에 간섭한것이며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교장 교감은 교육자를 당선시키는것이 교육을 위해서 좋을것이다라는 등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지시했기 때문에 연소한 교원박동훈은 인기투표까지 하게 되었고 동학년회등 공적기회를 이용하여 운동하였다.

추기 금화국민학교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장의 이동이 영전이라고해서 전별금조로 금30만원을 증정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거출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교감 교무주임에게는 가중

책임을 묻지않을수없다.

이하 금교교원들의 개별적인 답변및조사상황을 명기하였음.

1. 교원 박동훈(제4학년3반담임)의 답변및 조사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단기4291년4월17일경 하오에 정견발표회가 있었든바 당시 아동들로부터 서대문을구에서 입후보하신 김산씨가 좋으나 최규남박사가 좋으나 라는 질문을 받고 여사한 질문에 대하여는 너희 들에게 말할수없으니 이런것은 부모님들에게 가서 질문하라고 하자 아동들은 그러면 인기투표를 하여보자고 4학년3반 배준국이가 발설하면서 담임선생 박동훈이가 소지하고 있던 백지를 잔유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아동들은 인기투표를 한결과 잔유하고 있던 38명의 투표한결과 38명중 최규남박사표가 18표 김산씨표가 10표 나머지 10표는 휴지화된 표로서 종결을 지었다는바 담임 박동훈이는 차로 인하여 서대문경찰서 사찰계의 소환을당하여 냉철한 신문끝에 취급자(사찰계 정태진형사)에게 전기한 인기투표의 결과와 기당시의 인기투표용지를 제시하였드니 돌아가라고 방면하여주었다는 사실이있었고

또한 박동훈은 본조사반의 추궁에대하여 끝까지 자기의 행동을 陰弊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더묻지 마세요.

지나치게 묻지말라는등의 난처한 표정이였으며 그 밖에 박동훈은 연중행사라는 구실로서 가정방문을하였다함.

1. 교무주임 차병순증언에 의하면

당시 인기투표에 대하여는 전연 알지도 못하고있었다하며 후일 경향신문사기자로부터 동교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知悉하였다고함.

또한 교장지시여부에 대하여는 2, 3차들은것같은 기억이

있다고하며 교장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석에서 최갑수선생에게 최규남박사가 당선되는것이 교육을위해서 유리할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교장교감의 선거운동방식과 일치되는점 임.

그리고 풍설에 의하면 최규남씨가 당선되면 학교 수리비도 준다는 말도 들었을뿐만 아니라 교장으로부터 라는 말이 있었고 자신도 최규남씨가 교육자인 관계상 이왕이면 최규남씨가 당선되었으면 좋을것이라고 하였다는 점등을 종합컨데 본 건은 어디까지나 교장의 지시와 암시에 의한것이라고 사료됨.

#### 1. 교감 김종하의 답변및 조사상황

4학년3반담임 박동훈이가 인기투표를 하겠금된 동기에 대하여는 박동훈담임의 자의로 한것이고 자기로서는 사후에 알았다고하며 박동훈담임이 가정방문을 한점에 대하여는 4월21일부터 동월26일까지 하라고 지시한바 있다고하며 가정방문 시에 최규남씨에게는 ○표 김산씨에게는 ×표로 하라는등의 지시한 사실은 전연 없다고한다.

#### 1. 교원 최갑수(5학년3반)의 답변및조사상황

전기 동양으로 조사하였든바 교무주임 차병순으로부터 주석에서 선거관계에 대한얘기를 들은바있으나 당시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빈대떡 집에서 교육자가 선거에 당선되는것이 교육자를 위해서 좋을것이다 라고 말한것같다고 하며 기당시 동학급회의시 교장이 교재진도에 대한 타합이 있은후 여담으로서 교육자가 한사람이라도 더 당선되는것이 교육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한바 있었다함.

#### 추기

박동훈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의 교내의 인기는 최규남박사에 절대적인 여론이라고 증언하는 점으로보아 교장 교감등의

지시에 의한 성과라는 결론에 이름.

### 결론

본사건의 관계자전원 공무원이고 각급공무원의 휴계관련등으로 복잡하고 곤란히 허다하였으나 조사의 사명을 위해서 치밀한 조사진상은 상기한바 여한즉 차제에 관계공무원들이 의식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공문서위조행사등의 부정행위를 한바 이는 규율엄수로 인한 관기확립과 시민의 신뢰를 敦厚하여 시정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나 또한 시민이나 국민의 기본권리가 권력이나 타세에 의하여 유린되지 않고 또는 시민의 이해득실에 있어서도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며 공사에있어 공정무사함을 위해서도 본건처리는 엄단조치가 있어야하며 ○단에 있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본사건관계자들은 정리상 곤란하드라도 공을 위해서 엄격히 처리되어야 할줄로 사료되며 접촉법령은 공무원법 제37조및 동45조 교육공무원법 제27조 동36조 민선법제50조및 동78조 동일51조등이 적용되는바임.

본사건 관련자명단은 여좌함.

서대문구청장 이명세

서대문총무과장 이갑희

동총무계장 김태명

은평출장소장 이한정

동호적계장 윤동

성암동동장 권영덕

동사무장 구태성

동호적서기 허계

금화국민학교교장 최병용

동교감 조종하

동교원 박동훈

이상과같이 대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대문 구청에 있어서 공허지에 반공애국청년에 집을 건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은 물론 출장소에서 다아는사실이고 기공식에도 출장소장 관계관이 참석했든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암동 산1번지 끝에서 산마루턱에 공허지에 천막 세채밖에 없습니다.

이 천막3체에 많은사람을 수용을 해도 천막에 30명씩을 수용해도 90명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이제 천막에 또 2, 3일 동안에 2789명이 별안간 늘게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해 출장소에서 이렇게 격증하는 사실을 보고서에 넣고…… 또 이때까지 주택이 건립되지 않아서 살수없는 이런 대지인줄 알면서 구청에서 매월 작성하고있는 인구통계 보고서에 작성자가 고의적으로 보고작성하고 이 현지를 누구보다도 이 애국반공청년에 대한 문제를 격렬히 주의해서 실지 답사로 나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위로 그냥 작성해서 유명인구 또는 선거인 명부를 기재해서 투표에만 이러한 책임을 구청장은 시장에게 무르면 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답변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하고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총무과장은 출장소 소관이니 우리는 모른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조사위원이 이것은 조작이 확실하니 여기에대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나는 불응한다하고 일절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든 것입니다.

또 총무계장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선거인명부에 이 유명인구 약3000명이라는 수자를 기재해서 행사케한 또 구청장도 조사 나간다고 조사에 응하면 오히려 더 곤란하니까 전부가 회피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이러한 사태였든것입니다.

은평출장소에는 우리가 조사하러간다고 미리 통고를해서 은평출장소장은 출장으로 부재이고 우리가 조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윤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은 조사해본즉 기류계 취급 세척 26계에서 이복을 본적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출장소에 보관하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없는 이것도 없는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장소장이 조사에 응하지않으려고 자리를 이석해서 더분했든것입니다.

이러한것으로 보아서 또한 여기에 관련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수없습니다.

한가지예로서 4월에 신문지상에 보도가되자 현지를 조사했던 사실이있습니다.

그때 역시 저희 조사단이가서 조사한바와 마찬가지로 현지에는 100여명밖에 거주하지않고 이 나머지 2700여명이 다 어디로갔느냐 이것을 총무과장하고 시정과장에게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근처에서 떴습니다.

이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보고서 포함한 요지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아무 책임이 없소하지만 우리는 이런것을 선거에만 관련하는것이 아니라 그 행정취급에 있어서 규칙과 세칙을 자신들이 해놓고 자신들이 묻는데는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시민증발급 대장을 보면 동회에서는 23매밖에 시민증 신청부에 없는데 출장소에 와보니 150명 서대문 사찰계에서는 153 출장소와 경찰서간에 차질은 3매인데 경찰서가 많고 동과 출장소간에 차질은 127매가 더 많고 꼭대기로 올라올수록 그수가 많드라 말입니다.

이런것으로 보아서 전부가 이것이 확고한 증명과 증빙에 의해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만 이러한 것 보다는 성암동 사건 말씀할 때에 더욱 진상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것으로 보아서 본청 서대문구청 출장소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의 소재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또는 본청에도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암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암동 산1번지에 아무것도 없는 산마루터입니다.

작년 12월 초순경에 반공청년부락을 건립한다고 해서 기공식을 하고 그 후에 반공청년대표 오광직이라는 분이 동회를 찾아와서 우리는 반공애국청년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영주해야 되겠고 시민증도 내야 되겠다.

그러니 기류계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해와서 반공청년이라고 해서 특별취급을 해서 응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공청년대표 한사람이나 몇사람이 실지 사시면서 와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 얘기지만 대표 한사람이 와서 2789명 전부가 대표가 제출한 것이에요.

실지 본인들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간부가 와서 제출한 것이에요.

그 반공청년 전주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동에 동



적부 기류계에 역력히 나와있습니다.

전라도광주 경남의 거제 충남의 논산 강원도의 강릉 이렇게 그지역에 집단적으로 150명 100명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소가 100명 200명씩 동일한 거소에있다고 인정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한세대에 지금 현재 반공청년은 夫婦分을 맞고있다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 그런데 그 부부를 갖인 세대가 한사람의 세대 주 명의로다가 한집으로 사는것으로해서 100명 150명씩 한 집에 사는것으로 되어있어요.

전부 이렇게해서 이사람이 반장으로서의 증명을했고 그 다음에는 대표가 증명을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반장으로서 대표자 역할을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중의 한분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동회에서 반장을 아느냐하면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살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도장만 찍어온것을 가지고 동적부를 만들고 기류계를 만들고 투표까지하게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공청년의 신분을 무엇으로서 밝히느냐했습니다.

대표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인정했습니다.

이런얘기를 동회에서 하고있는데 거기 2789명중에는 여자가 530명이 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여자는 반공청년이 아니냐하니까 그것은 부부입니다.

부부면 우리 38이남에다가 주소를 가지고있을터인데 그분

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않느냐  
그러나 반공청년의 부부고하니까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어린아이는 앓났소」 하는이 있음)

어린아이는 없고 전부가 어린아이도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유권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지금 이분들이 투표를했고 여기는 살지는 않고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만 투표했으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애  
기를 하고있는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전주소가 남한 각처에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에 살지않고 선거법에 금년 3월1일이전 60일이상 거주한 사  
람이면 어디서든지 투표권행사를 할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는데에서 하고 전주소에는 주소가 있어서하고 여기에서는  
기류계가 있어서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느냐 우리대한  
민국의 인구가 과뇌치정하는 말고 2천만이라고하는데 이렇게  
수를 늘인다고하면 5천만도 될수있고 1억도 될수가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것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갔다 노은  
것같고 무능한 사람들만 갔다노았고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  
람들만 갔다 났다 이런 말에요.

그래 지금은 얼마가 살고있느냐하면 148명이 살고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신사회의원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장하고  
갔는데 물어보니까 사는분한테 물어보니까 실지…… 이것 의

회에서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참 반공 의식을가지고 애국운동을 했다는데  
깊이 감사의말씀을 올리러 우리의회에서 여러분에게 온후한  
대책을 세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하니까 마포 반공청년지부가있습니다.

지부에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오셔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안했소. 시민증은 냈습니까? 안냈습니다.

그러면 동적부에는 올렸습니까?

그것 올렸을것입니다. 이랍니다.

실지 거기의 반공청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않았다 그말  
이에요.

여기에 대표가 있습니까? 하니까 한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백무엇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분  
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형사가 성암동에도 와있었고 사무소에도 와있었고 반  
공청년 부락이라고하는 148명이 산다는데에 와서 있어요.

아마 미리 연락이 된것같아요. 대표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왜그러시우 시의회에서 나왔는데 말씀을 여주어보려고 나왔  
습니다.

우리 바빠서 당신네들하고 얘기할 사이가 없소하고 간단말  
이에요. 그래서 여보시요 잠깐만 말씀드리고 위로드리러 왔읍  
니다.

하니까 그냥 가드라 그말이에요.

그때에 「로이도」 안경을 쓴사람이 형사인데 우리의뒤를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해서 현재 살고있지않은 사람이 반공청년이 확실하고 또 그사람 중에는 확실히 부녀자가 많으니까 장로되는분과 부인되는 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집이 일곱채가 있는데 한체에 지금 10세대가 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실 지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진않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당시에 허공한 집에다가 사는것처럼해서 보고를하고 만들고 투표권 행사를 시키고 아주 역력히 지금 가보아도 역력해요.

이런것이고 또한가지 인제 이런것이 있습니다.

은평출장소의 간부 공무원들 위조행사했다는것은 매월 월말 상주 인구 통계보고서라는것이 있어요.

이것은 실주자 통계를 하기위해서 동에서 출장소로 본청으로 내무부로 이렇게 아마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실지 이동 상황을 파악해서 실주자를 조사해서 보고하는것니다.

여기에 12월말서부터 이 2789명이 그대로 올라가 가지고 보고가 되었단말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말이 부재자가 실재자로서 허위보고를 냈느냐 그저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런식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일억도 넘게되요.

군데에 가서 한 만명만 제출만 해노아도 한사람이 10사람

의 수로 될것이고 천사람의 수도 만들수있는것이에요.

2천만이 아니라 5천만도 넘을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것이 사실이라면 2천만이 사실2천만이나.

서울시 인구가 160만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이 정확하냐 150만이나 3백만을 160만으로 하느냐 100만을 160만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성암동 한군데에 이런 3천여명에 가까운 수자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유령이니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행정을 해내 갈수가 있으며 이런것을 다슬려 나갈수가 있느냐 이런얘기에요.

(「올소」 하느이 있음)

이것이 또 이수자가 동적부 기류계 보고서하고 약간의 차가 났으니까 이것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수 박사 우리 신사회의원이 세가지 대장을 펴노고서 다 나왔어요. 이런데의 사소한 수자는 불문에부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그허위보고를 작성하고 행사케한것이 누구냐말이에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유령이있느니 없느니 잘했느니 우리가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중앙에 물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느니 우리가 중앙 선거위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렇게 무능하고 법을 모르는 법령을 위반하고 위조하고 행정을 이렇게 허위로 만드는 이러한것을 밝히는데에 목적이있단 말이에요.

이러한것을 알고있으면서 이러한 허위 공문서 정비를 안하고 이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범법한 공무원을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영전까지 시키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행정부에있는 책임자들도 여기에대한 각성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고 집행부에서 무능한범법 공무원 또는 모순된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이러한공무원을 차제에 우리 의회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므로서 전례에없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서 없애기 위해서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이 취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다음 금화국민학교……

마침 교육감 교육국장이 여기에 만나오셨는데 관리국장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을 보면 전국 각처에서 교육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이 선업에 간섭하고 조작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많이있습니다.

우리서울시에서도 특히 교육공무까지 관여하고 인기투표를 시키고 한사실이 우리서울특별시 한복판 서대문 금화국민학교에서 났다는것을 통탄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 서대문국민학교 교장 최종하씨를 위시한 교감 조병용 인기 투표를한 4학년담임 박동훈 선생들은 4월초순경 인기투표를 할때에 4월25일 17일 처음에는 인기투표가 조사하니까 이것은 선거법에 절대로 못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못하게되어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동들이 「선생님 우리선거구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 물었드랍니다.

「그런것은 선생님한테 묻는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부모한테 물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후에 「선생님다 알면서 무엇을 그러케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기투표를 할랍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었더라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동훈이라는 젊은 선생이 시험답안 용지를 백지를 찢어서 38명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면 해보아라 그래 한것이 10장은 어떻게 휴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28매중에 18장은 최규남씨가 나오고 10장은 김산씨가 나왔다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났어요. 이것을 서대문 경찰서의 정형사한테 오라고 하니깐 갖다 주어서 사실을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느냐.

교장은 동학년회라는것이 5학년 6학년은 교장이 담당을 했고 3학년 4학년은 교감이하고 1학년 2학년은 교무주임이 했어요. 여기서 서로 교대로 해가면서 동학년회에 출석을합니다.

그러면 동학년회는 무엇을 하시고 하니 학과 진도타협이요. 마친 연후에 좌담의 형식으로 우리 교육자는 교육자를 당선시키는것이 좋을것이다.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를 한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게 하자. 이렇게 직위를 이용해서 암시도 하고 또는 표시도 하고 해서 전교원의 여론을 조작을 했습니다.

조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동훈이가 얘기를 하는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때 서대문국민학교에는 절대 최규남으로 인기가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박동훈이도 인기투표까지도 하게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감한테도 묻고 교무주임한테에도 물었는데 이사람들이 모아놓고 시킨일은 없다말예요.

몇번 2 3차 들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 나왔읍니다마는 공식에서 했다 사석에서 했다 나왔어요.

이것이 교장 교감 교무주임 직위를 이용해서 연소한 학생들한테 감화시키고 권력으로 내려누르고 직위를 이용해서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투표를하게 만들어놓고 또 학부형회 때에 모씨가 여기에서 학교를 수선해준다고 그리고 입후보까지 했다고 하니까 학부형이 부형회요?

선거운동이요? 하는바람에 고만 몸즉하고 말은 본건 이러한 썩은 교육공무원앞에 우리 子女姪을 내놓고 교육시킬수있느냐 말이에요.

2세국민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내보아라 말이에요.

그래놓고 금화국민학교교장은 삼광국민학교교장으로 6월3일자 발령으로 영전시켜놓았어요.

그후에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몇번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통해서 조사할테니까 오라…….

와 주십시오. 해서 여러차례 앓나왔어요. 그러지 6월 21일 날에와서 미안합니다.

해놓고는 연구교육때문에 못나왔습니다.

오늘은 연구교육이 없으십니까?

오늘은 없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면 오늘도 연구교육이 있으면 못나올번 했읍니다…….

물론 그렇지요…….

이따위 공무원이에요.

의회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모든것을 다 무시하고 교육공무원 교장이면 제일인줄 안다 말어요.

법을 이렇게 범해놓고도 厚願無恥하게 양심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너희들은 다 무엇이냐 하는 따위에요.

이 심리를가지고 영전이 되어버렸다 얘기에요.

이것은 차제에 엄단하고 교육의 신성화를 위해서 일반서정의 획기적인 기강을 확립하기위해서 엄단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본조사위원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저촉법령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법 37조및동45조 교육공무원법 제27조 동36조 민의원선거법 제50조 및 동78조 동151조등이 이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것입니다.

이 법문을 시간이없어서 읽어드리지 못하고 조문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관내 또 시행정부문의 부정사건과 관련공무원이 범법자에대한 증언을 이상과같이 보고말씀 드리고 영등포관계는 신중수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신중수 의원; 영등포사건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리기전에 잠깐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국 이래 정부통령 민의원 지방의원 수많은 선거를 경험했고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주권발휘를 아낌없이 했다고 봅니다마는 이 선거때마다 부정투표니 무더기표니 환표니 폭행이니 여러가지 말성이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항상 민중의 공기도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신문은 여론창달에 많은 공헌이 있다고 저는 치하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연이나 이번 이 영등포사건은 제가 조사한바에 의할것같으면 지방의원 보궐선거에있어서 신문보도가 조사한 그 실태와는 왜곡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보도에 정확하고 또 논설의

공정 말하자면 반대 주장의 건실 이런 세가지 신문의 논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지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취재한 점이 허다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입니다.

그사실을 그대로 여기에 내노았습니다.

또 한가지 오늘날 신문을보면 모신문은 모당을 지지한다.

모당의 기관지이다.

그러게 너무 편당적인 관계로서 신문보도에 사실이 민중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정당한 보도를 해서 민중이 정당하게 인식하고 민중 계도의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편당적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가지고 민중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보기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개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지방의원 선거구 제6구 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공천시의원입후보자 장영일의개인정견발표회를 개최코져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소정신고를 마친후 5월26일 은로국민학교에서 연설회를 시작코져한즉 은로국민학교당일숙직자인 이동희교사로부터 교장의 지시가없으니 교정사용을 승락할수없다고 거절하자 군중이교정내로 침입하는등 소란을 야기하므로 학교측에서는 소할명수대 파출소에 군중의해산을 의뢰한바 동파출소 정북경찰관 2명과 영등포서 사찰관이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신문기사게재의 경위는

학교측에서는 당일같은 시간에 동일장소에서 동구에서 역시 입후보한 무소속의 유열로부터 먼저 교정사용 신청이 유하여 승락한고로 장영일의 정견발표를 거절하게되고 전기와

같이 해산을시킨즉 장영일의 찬조연설차 나왔든 김상돈 조재천씨등은 격분하여돌아가서 차사실을 경향신문사에서 발설하게되고 또한편 경향신문 영등포지국 기자 이필대 역시 이사고 관계로 본사에간즉 이미 본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있는지라 이필대기자로부터 다시 기사실을 확인한 연후에 5월27일자 조간2면에 영등포지국발 기사로서 취급한것인데 이러한경로로 취재하는동안 침소봉대로 왜곡된보도를 하게되었으므로 경향신문사에서는 사회부장으로하여금 경찰측에 대하여 본의아니었음을 陳謝하는 일방 해사고를 오전하여 社의위신을 실추케한 영등포지국 이필대기자를 해임하였습니다.

관계자의증언및사실조사상황은

본건관계자의 증언및사실조사결과를 종합한바 하기와같습니다.

구선거위원회에대한 개인정견발표회 개최신고에관하여 5월26일 은로국민학교교정에서 개인정견발표회를 개최코져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고된바에 의하면

유열 (無) 5월26일 自17시 至21시

장영일 (民) 自17시 至22시

로서 동일시각에 동일장소에서 2인의 개최신고가 있었으므로 당해선거위원회에서는 민의원의원 선거법에 정한바에의하여

신고순위에따라

유열 (접수번호163호) 을 선으로

장영일 (접수번호166호) 을 후로 각각 개최시간을 배정하였으며

신고를 접수함에있어서 쌍방공히 은로국민학교교장의 학교사용 승락서를 첨부하지않으므로 선거위원회측에서는 승락서

를 첨부할것을 구두로서 약정하고 해신고를 접수한바 다음전기  
와 여히 순위를 결정하였다 합니다.

당해선거위원회에 비치된 개인정견발표회 개최신고서철에  
의하면 유열 장영일양인공히 5월26일의 학교 사용승락서가  
첨부되어있지 않습니다.

은로국민학교에대한사실조사

사고현장인 은로국민학교에 임하여 기사실을 조사한바 동  
교교원 김규홍의증언에의하면

유열에 대하여는 당일학교교정사용 승락을한 사실이있으나  
장영일에 대하여는 승락한 사실이 없고 학교 사용승락을받은  
유열은 당일학교교정에서는 연설회를 개최하지않고 학교문전  
일각에서 연설회를 개최했다고하며

동교속직일지에기재된기사를보면

「5월26일 오후6시50분 민주당측의 운동장사용 요구하자  
소속장의 지시받은일이 없어 거절하자 군중이 침입함으로 경  
찰에게 해산의뢰서제출 동시경찰이 군중해산」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경찰측의증언에는

본사건에대하여 영등포경찰서사찰계에 임하여 사실조사한  
바

당일 무장경찰관 40명 동원운운은 전연사실무근이라하며  
현지에파견된 경찰관은 사복에사찰계 심홍섭주임외2명 정복  
은 관할명수대지서직원2명 「정복」 계5명뿐이고 모두 비무장  
이었고

당일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한것은 학교측에서 교정사용을  
승락하지않았든 관계로 연설을못하게 되자 군중이 소란을 야  
기하므로 학교측에서 관할명수대지서에 해산을 의뢰한고로

동지서에서 정복경관2명이 출동하였고 심주임등 사복경찰관은 정계요인들이 찬조연설차 다수내임하였으므로 기신변을 호위하고 연설회를 平隱리에 끝내기위한 견지에서 미리 파견되었던것인바 사태가 악화되지않도록 하기위하여 군중을 해산시켰고 이러한 광경을 목도한 김상돈 조재천양민의회원이 경향신문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되자 때마침 내사했던 동사영등포지국 기자 이필대로부터 기사실을 청취한다음 경향신문본사사회부에서는 기사실을 영등포발기사로서 침소봉대로 취재하여 5월27일자 조간2면에 게재하게된것입니다.

동기사로 물의가 야기되자 該社에서는 사회부장 신태문으로하여금 영등포서에 진사케하는 일방 이필대 영등포지국기자를 해임시키겠다는 별지 「寫」 와같은 각서를 사회부장명의로 제출하였든바 6월26일자로 이필대기자는 본사건을 인책코 해임시켰읍니다.

또한편 경향신문사에서는 6월18일자 조간 「요모조모」 란에 다음과같은 기사를 써서 경찰측을 대신해명하고있읍니다.

「영등포지구의 선거 은 자유분위기였는데……」

아니 지난번 시의원보선을 할때 경찰이 선거분위기를 깨뜨렸다……고 신문에 났으니 어떻게된셈이요?」 영등포서의 정서장은 지난5월27일자 본지2면에 게재된 「깨어진 선거분위기」 라는 제목밑에 기사내용에 대개 「억울하게 경찰만 맞았다」 고 말하였다.

「특히 기사내용에 40여명의 무장경관이 나타나 연단위에선 입후보자를 끌어내렸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날 정간사를 살해한 간첩을 잡느라고 형사들은 성과관악산쪽으로 총출동했던 날이거든요」 하면서 동기사는 잘못된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정서장은 이어 「참 억울하게 신문에 맞았습니다. 자유분위  
기아래 영등포관내에서 선거를 치루었다는것은 시민들이 더  
확정하게아는 일입니다」 라고 부언하였다.

각 서

경향신문사영등포지국기자 이필대는 본사간부회의에서 해  
임시키기로 합의를 보고 6월19일 지국에 통보하기로 되어있  
음.

追 而 이기자의동조치는5월26일자신문기사에관련된것임.

경향신문사사회부장

신태문 인

결론은

본건진상을 조사한결과 이상기술한바와같이 기사실이 신문  
보도와는 판이하고 기사고를 왜곡보도토록 취재를 소홀히한  
일선기자에 대하여는 이미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본건은 불  
문에부합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등포구흑석제2동장 보궐선거시 투표소내사복경찰관  
입회설에대한조사상황

단기4291년6월5일 실시한 영등포구흑석제2동장보궐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소속 이홍구 자유당소속 장도식 양인의 입후보  
가있어 투표당일 투표구선거위원및자유당측참관인 한성우 민  
주당측 참관인 이종원 영등포구선거위원회측으로는 영등포구  
청총무과 근무나덕신(동정사무촉탁) 감시하에 투표를 실시한  
바있으나 당일실정을 예의조사한결과 사복경찰관이 투표소내  
에 잠입한형적을 구지할여지를 발견할수없었고 다만 전기 영  
등포구선거위원회측감시원나덕신이 당일일반적인 복장이아니  
고 작업복을 착용하고있었음을 경찰관이 흔히 착용할수있는  
작업복착용자가있는 관계로 사복형사로 오인된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투표완료후 개표결과 자유당소속장도식 1571표 민주당소속 이홍구 753표를 각각획득한바 자유당소속 장도식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이원옥 의원; 아까 성암동 조사관계에 具喆會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 누구 이렇게 세 사람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말씀끝에 이원옥이는 사표를 냈다 이런말씀을 했습니다.

구의원께서 그 사표낸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구테여 내가 가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마는 그저 사표냈다고 하시니 내가 이자리에서 말씀안드릴수없어요.

사표냈습니다.

사표 내게된동기가 몇일 몸이 아파서 나오지못했어요.

그래 몇일 앓나오다가 나와보니 성암동관계의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니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몸이 아프니 못나왔고 앞으로도 몇일동안 대단히 과로워 못나가겠으니 듣건데 이 조사관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여론거리가 된것같어서 내가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다 생각하는 관계로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문서를 냈습니다.

내가 신병으로 인해서 본조사단에 참여할수가 없으니 아까 具喆會위원이 말씀하신것같이 시정구락부의원 3명 민주당의원 3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없이 그냥 선정되었다면 두분의원이가 적당히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싶은데 내가 생각할적에 시정구락부의원이나뿐만 아니라 많이있어요. 내가 앓나가면 안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한테 정식으로다가 문서로 냈어요.

나는 신병으로 못나가니 다른의원을 선정해달라 했는데 아까 具喆會의원이 말씀하기를 무두무미하게 이원옥의원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되었어요. 또 의장은 내가 구두얘기한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문서로 냈다면 꼭 나가야될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의원을 선정해야될는지 했어야 될것 인데 그냥 나가서 두분이 조사하고 이원옥이는 사표를 냈다고만하니 내 자신이 생각할적에 여러분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실것이고 이원옥이는 무엇때문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것같어서 한말씀드리는데요.

내 평소에 이원옥이가 책임감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회피하려고 하는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사정이 그렇게 되여서 두분이 나가서 하신것이니 여러분께서 그것을 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문학우의원 규칙발언드립니다.

○문학우 의원; 지난번 정기회의때에 조사위임한 성암동유령 인구 사건과 영등포흑석동 선거간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지금 조사위원들의 보고로 잘들었습니다.

본래 본회의에서 위임하기를 두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서 세명씩 선출하자 그래서 선출방법을 의장에게 위임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다가 조사위원한명이 빠졌는데 지금 사퇴하셨다는 이원옥의원께서도 그것을 보고하셨는데 이원옥의원



사임하셨다고 하시면 조사위원 선정을 맡으신 의장께서는 사임하신 즉시 이의원의 후임으로서 어떠한 의원으로 대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분으로하여금 조사를 하겠음 위촉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가 분명히 6명으로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것을 결의를했다 그말에요.

지금 이 5명이 조사한 실질적으로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한반에 2명이 가고 한반에 3명이 갔는데 한명이 빠진 이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드려야 옳으나 옳지않느냐하는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여기에 논의가 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라기 보담도 조사위원 6사람을 결의한 의회의결의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무시한 결과적으로 이 5명의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를 냈다 그말에요.

그렇다고 하시면 후임자를 선정하지않어도 그대로 의장이 직권으로서 조사를 단행할수있느냐하는 이 문제를 의회 자체가 알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올라온것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분이 사임하셨으니 다수의원칙에 의해서 3가운데에 하나가 그만두고 둘이 하셨으니 그만인 아니냐 그렇게 나오신다면 문제가 별문제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회로서 6사람의 조사위원을 결의했다 그말에요.

그러니 한분이 그만둔 이 경위와 의장께서 직권으로서 5명으로 하여금 조사를하게 시킨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대치를 시킬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조사를 하게끔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그 당시에 사태를 부의장이 해명해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의원; 아까 具喆會의원 말씀하신 것과 이원옥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의원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 선출한 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민주당이나 시정구락부나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고 6사람을 선출하기로 해서 3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3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정한 후에 조사할 날자는 되었는데 이원옥 의원께서 나오시지 않아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했더니 누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몇일 후에 오셨는데 병으로 해서 사실을 조사하시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무사임원을 제가 접수해서 의장단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게 토촉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으로 대치를 했으면 좋겠으나 벌써 두분은 조사에 착수해서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 서기한테 보조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일로 바쁘셔서 그때에 의원들이 나오시지 못하고 해서 대치를 서기한테 보좌를 해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이만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로서 보고를 끝났습니다.

(「의장」 하늬이 있음)

박수형의원 말씀해주세요.

○박수형 의원; 본의원은 이 조사보고를 듣고 느낀바가 있어서 먼저 여러 의원에게 동의를 여기에 얻어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여기서 제안코져 하는바입니다.

채택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지으실 일이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시에 이유를 조사위원이 이것을 조사하고 또한 조사위원에 그 보고에의하면 명백히 법을 무시했다.

공무원으로서 있을수가 없다.

이것을 단정했든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올리자는 그 안건은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및 기타 선거간섭에 관한 조사보고 처리동의안이 올시다.

처리동의안인데 그 안건으로서는 유령인구 기재관계및 교육공무원 파면 및 고발 동의안이 올시다.

그 내용은 서대문 관계 공무원은 시장에게 파면 권고안을 낼것이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중앙선거위원장은 대법원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선발하자 그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본 내용을 보게되면은 명백히 불법 위법을 감행했다.

그것이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난후에 불법이나 비법이나 물어보았드니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시민의 이름으로서 중앙선거위원장을 대법원에 선발하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안건을 처리하기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시에 찬성해주신다면 저는 이 안건을 먼저 심의해줄것을 의장님께 부탁하면서 본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구의원 말씀하세요.

○具喆會 의원; 지금 본사건에대한 처리문제에 있어서 박수형의원이 ○명안을 들고 나와서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이거 확실히 구별짓고 넘어가야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고사항의 서두에 명확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한 목적은 선거를 위주로한 조사가 아니요 행정을 소홀히하느냐 법을 준수해가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조사한것이고 공문서를 정연히 처리했느냐 안했느냐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박수형의원은 처리문제의 골자에 중앙선거위원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자. 대단히 좋은 얘기에요. 만약에 이것이 역력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래서는 안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이 고발이 원고의 패소로 돌아올때에 이 사실은 사회에 그냥 은폐되고 마는것이라고 하는것을 현명한 박의원은 또한 알으셔가지고 이 처리결과가 시민에게 명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할려면 지금 그것만 빼시고 시장에게는 권고 교육감 권고 지금 烈記된 서대문구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 출장소장 호적계장 동장 사무장 동호적 서기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법도 열거해노았읍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지못한 이상에 과연 권고결의를 내서 처리하도록 하고하는것이 우리 말은바 시의회의 직무의 권위라고 보는것입니다.

지금 박의원이 처리방안을 하신중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장 고발사건이라고 하는것만 빼는것이 오히려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광 의원; 이제 박수형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찬성을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사일정 변경부터 해놓고 그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사를 거기에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중앙선거위원장 고발 또는 관계책임자에 대한 파면결의안등은 그 당시에 논의를 하기로하고 우선 성암동 기타 선거간섭에 대한 조사에대한 처리를하는것으로 이렇게 의제를 해놓고 그후에 논의를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즉각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접수해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 시간은 보고사항만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보고로 그치고 이 보고사항에서 다른 순서로 넘어가서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채택해서 거기에 또한 논의해야 할것입니다.

(「보고사항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보고사항이 다른 순서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른 동의안으로 채택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의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과연 이것이 전부가 위법 불법으로 되었지만은 사실상 그것만으로 한다는 확정적인 법리면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할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나올것이니까 이런것을 박수형

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에 찬성을하고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찬성합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이제 정식서면으로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지금 채택하는것에 가부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시는 있음)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본동의안 채택이되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시는 있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심의 토의에 들어갈 그 찰나에 앞으로 의사진행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려두고 넘어 가지않으면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입니다.

어제 궤도청 운수사업 문제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질의가 거개 47명의 의원의 질의 그 내용이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비치기때문에 결의에 들어가서는 2차에 걸쳐서 폐기가된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의가 이상스럽게되어가지고 토의에들어갈 적에 토론이충분히 되지아니 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하는데 폐기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합니다.

그러면 의원 각자가 이 폐기가 된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 구성된 이후에 두서너번 된 일 이때 토론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부 표결에 참가를 못했다는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 의원은 폐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가

부간에 표결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중구 부의장이 질의 종결 지었을 그 당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표결 보류동의 발언을 요청했던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표결 보류동의 발언을내면은 이발언이라는것자체가 질의종결동의와 의결종결동의와 마찬가지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것이에요. 그러면 표결직전에 이발언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대한것을 물은다음에 다음에 표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중구부의장이 자기가 가진 직을 가지고 말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구부의장은 회의규칙 1조부터72조 지방자치법101조부터 162조를 혹은 국회법이나 회의법에 대해서 통상적인 여론을 들어볼지라도 의장으로서는 가질수없는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하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의원의 발언권을 억제한다고 하는것은 원의가 아니면 않될것이에요. 또거기에 의장이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것은 회의 규칙19조2항이나 20조 1항이나혹은 29조 31조등에 말함을볼것같으면 약간에권한이 있다는것을 알거니와 그권한은 의장이가진 권한외로 발언권을 억제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런것을유의하셔서 진행해주시지않으면 민주행정에 옳은 길을 밟을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의장 박명준;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강을순 의원; 이제 성암동사건을 비롯해서 조사보고를듣고 놀라지않을수가없는 현심경에 임하고있는것입니다. 현재 그안건 자체의 언급을 이사람은 별도로 우선말씀드리고 우선 여기에대한 현재서울특별시시장내지 교육감을권고하고 관계각국

공무원에 대한 파면결의안에 이 사람은 서슴치 않고 찬성하는 한 사람이 옳습니다. 우선 일응 이러한 사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타났지만 의회가 다시 자치단체의장 내지 교육감 또는 해당 구청장에 대한 한번 의회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등의 관계 각급 공무원에 조사위원회 보고를 인정안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좀더 인사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우선 관련된 시장 또한 교육감께서 또한 서대문구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놓고 우선 그 사실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의사 진행상 당연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의사 진행상 나온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직각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놓고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 진행상 발언하는 것이 올시다.

○의장 박명준; 이제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에 출석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간사장 연락해주세요.

(「의장」 하는이 있음)

그러면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 의원; 지금 성암동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채택되어서 관계 관에 대한 출석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암동 유령 인구 기재 사실과 아울러 같이 조사를 병행한 영등포구 6구 시의원 보궐 선거 당시에 강연 방해를 했다고 하는 조사 보고로는 여기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사 보고에 과연 본건은 불문에 부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사위원회 견해를 보아서 사건이 대단하지 않



으니까 불문에부치자는 결론이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생각하기에는 확실히 그날 강연회 장소에 경찰관이 동원 되었다고하는 이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영등포시의원 보궐선거강연 방해사건에 대한 즉 확인을 하기위해서 서울시경사찰과장 영등포서장을 출석시킨 다음에 이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방해사건에대한 결말을지는 동시에 사건에 즉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바이 올시다.

(「추가하세요」 하는이 있음)

그렇까요.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강의원이 동의하신 거기에다가 시경사찰과장 영등포경찰서장에 출석을 추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잠깐조용해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 벌써 12시반이지나서 40분이 되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이 걸릴것같으니까 오후 회의에 여기에 참석하기로하고 오전회의를 좀일즉이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조의원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아까 강을순의원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다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수호가 보고를내용대로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출석하자면 시간적인 여유를가져야하기때문에 오전회의를 마치고 2시에계속하기로하고 출석시키는 책임을 사무처로하여금 완전을 기하도록 했으면좋지않을까 합니다. 2시로…… 의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오전회의는 일로마치고 하오회의는 2시부터 다시속개하겠습니다.

(12시 4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재석의원 32인으로 속개하겠습니다.

중요한 안건이니까 집행부소관 해당국과장 출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곧 나온다고 하니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3항을 갔다가 상정하는것이 어떤까요.

(「안되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5분동안에 않나오면 다른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그러면 5분되었으니까 상정합니다.

안건 성암동유령인구기재 관계관 파면고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수형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주세요.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문학우 의원; 지금 의원께서 박수형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회의에 누구누구 출석시키라는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하오2시에 속개되는것을 알렸으면 두시정각에 관계관은 여기에 출석해야 하는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성암동사건 보다 먼저나와야 하는데 지명한 관계관에 출석하지않는 이상 박수형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는 꼭한번더 연락을해서 전원출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구; 지금 다 오는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수형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

### 3. 성암동유령인구기재관계관파면고발에관한안건

○박수형 의원; 조사보고를 들은후에 다시한번 하나의 처리 방안으로서 이안건이 제기된것입니다.

이것이 여러의원의 질의라든가 혹은 법의견해라든가 혹은 이자체에 정확성여하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사의원여러분이 보고한 그법에의해서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결정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이선거를 여러번 추루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한 민주주의라는 다시말하면 선거정치인데 이선거가 있을때마다 이런일이 나서는 참민주주의국가라고 우리가 어디다 내놓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또한 이러한 일이 있다는 이자체가 역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이런 행위를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러한 처리안을 내는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이사람이 본동의안을 내놓은것입니다.

그래서 그안이 자체에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관계관 파면권고 고발동의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내용은 첫째 서대문구청관계관 (관련되어있는 공무원) 현하금화국민학교 공무원을 파면하자는것입니다.

또이내용에 이것은 대개 부분적으로 시정하느냐 않하느냐

하는것을 중의로 결정할문제겠읍니다마는 아까낸 이동의안 내용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장을 대법원에다가 고발하자 이러한 내용이 같이 적혀있읍니다.

그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왜그러냐하면 평상시에 병무호적 사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역시 이것이 어떠한 모든법에 근거를 두어야하거니와 선거를중심으로 그러한 2700여명에 유령투표를 시키기위해서 이러한 유령투표를……

병무호적법으로 보아서 역시 묵과할수없는 일이고 특히 관련된 이사람과 서울특별시 선거위원장도 여기에대한 법적 한계에대한 책임을 지어야할것이 아닌가…….

이것을 대법원에 고발하는것은 첫째 이러한 의미에서 나왔든것입니다.

그이유는 2700여명에 대한 이러한 부정투표가 있었고 역시 선거관계 직원들을…….

이것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이것이 불법이나 합법이나하는것을 질의했든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장 명의로서 역시 이것은 비법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조사위원회에 다시말하면 보고를 들어보면은 명백히 아까 보고한 의원의 보고내용을 물어보게되면 이법적조문을 들어 불법이라고 단정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불법인가 다시말하면 부정투표가 있다.

불법이라고 증언한것이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단언이 내리느냐 또는 어디까지나 미궁에 끝치느냐 판결을 받는 대법원에다가 고발을해서 여기에대한 해명을 받느냐 이것을 첨가동의로 했든것입니다.

또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조사위원 조사보고에 근거를 두고 동의안을 냈든것입니다.

이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여기에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 의원; 성암동 유령인구기재사건과 선거간섭에 관한 이조사보고서를 오늘받고 시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분을 금할바 없는바입니다.

공명선거를 지향하겠다는 말단공무원들이 2789명이라는 막대한수자의 유령인구를 만들어서 선거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시킨것은 국민들로하여금 행정부를 불신하는 이러한 관념을 갖게했다는것은 이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분을 금치 못하는바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지하신 질의로인해서 이사실의 전모가 시민앞에 명백히 들어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본의원은 본 조사서에 의거해서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몇가지 질의를하려고 합니다.

조사서에 나타난 유령인구 2789명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이 조작의 목적이 선거와 결부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알아야되겠습니다.

또조사서 17 「페이지」 에…….

현재에 반공청년 14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사람에 물어보았드니 투표를하지않았소 하고 아까조사위원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지않었다고 하면이 유령인구와 선거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 이관련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유령인구 2789명이 이중투표냐 또는 성암동에서 투표했다고하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느냐?

그영향의 결과를 알아야하겠습니다.

금화국민학교 4학년3반 「박순국」이라는 어린아이가 「박동훈」이라는 선생에게 묻기를 이번우리구에서 입후보한 중에 누가좋습니까. 이러한 말을물어서 그선생이 그것은 가정에서 물어보라했드니 그학생이 인기투표를 해보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서 국민학교4학년 다니는 아이가 총선거의인기투표를 하라했다면 그러면 그학생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아이를 대질해서 조사를 해보았는지 안했는지 만일해보았다면 이것은 그아이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배후에서 인기투표를 사주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선생이 학교가 아닌사석.....

酒席에서 선거에 관계되는 얘기를했다 거기에서 교장의 입장에서 기왕이면 우리구에 교육자가 당선되는것이 좋다는 이러한 얘기를 사적인면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술집에서 얘기냐? 「빈대떡」 집에서 얘기한 것이 그사람의 직업이 교육자라고 해서 얘기가 좌석 교수시간의 연장으로 보았어요?

이상 다섯가지를 조사단에게 묻겠습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의원; 성암동유령인구기재사건에 대하여 서론은 약하고 몇가지를 금반조사하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이사람이 몇가지 의아한 점을 아까 조사위원중의 具喆會 의원께서 보고말씀하신데 대해서 의심을 갖는것이있어서 질 의하고자 합니다.

아까조사보고사항에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마는 구두로

말씀하시기를 5·2선거 당시에 동대문근방에서 자동차로 약20명정도씩 편성을 해서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하면서 다시하고 또이러한 사실을 조사서에 기재되어있지만으나 확실한 그러한 근거를 잡을수있다는 말씀을 이사람이 들은바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금반조사보고서에 그근거가된다는 말씀을 했다고하면 그근거될만한것을 조사서에 기재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동적부를 동회에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거주권이 자기구에는 오늘 어느구 어느동을 막론해놓고 내가일례를 들어서…….

서대문구 성암동하면 성암동에다가 동적부를 낸다고 할때에 그동적부 받는 동회에서 과연 그사람의 거주여부를 그현장에서 확실히 다 증명할만한 그사람이 근거를 갖어가지고 접수를할때에 까지의 조사를 하셨는지 그렇지않으면 동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금 이자리에나와서 유명기재를했다는것은 근거를두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간단히말씀을 들인다고하면 이사람이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누구든지 동적부를 낼수있는것은 제출자의 권한여하에 지금행정말단 기관으로서 제출된 그사람의 신분여하는 추후에 관계당국에서 조사여부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적부를 제출한다고 하면 받을수있는 하나의권한이 있다는것과 권한이 있으므로로서의 이동적부를 받게되어있는 사실을 유명인구로서의 270명이라는 막대한수자를 유명인구로서의 오늘날 이사건이 얘기하겠금 이시간까지 오게했다면 그문제를 과연조사원께서는 아까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로 동적부를제출하는 그사람네들의 동자체내에서 그모든문제를 잘 파악한 연후에 이조사보고서에다가 기재를해가지고 지금현재에 유명인구로서의 말씀을하시는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이사람이 알고있는 범위로보아서는 서울선거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한결과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본사건자체는 도저히 본안건에대한 문제가 불법이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보는데 아까조사위원이신 구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오늘이 조사내용을 본다면 서울선거위원회나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말씀한 그안건자체가 전부가 불법적인 처사를내린것같이 결론을 내린것같은데 그러면 금반조사위원여러분들은 중앙선거위원회는서울선거 위원회가 하는 처사가 불법이라 인식하는동시에 이사람이 생각이 된다고 인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하면 조사위원이 본조사에대한 문제가 중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것을 시종일관 불법적인 처사로서 인정하시겠는가 안하시겠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상 다음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문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다른것은 간략하기로하고 이제가지에대한것을 질의코저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에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순 의원; 조사보고서 6「페이지」 말미부터 네째번에 총무계장이 그다음에 본청 시정과장 두분이 여러분도 조사까지하고 허위라는것을 알면서도 공문서 처리를 하지않었다는 이러한 조사보고가 있는데 현지를 조사하신 시정과장은 이것이 유령인구라는것을 확실히 알고서 고의적으로 처사안하셨는가 혹은 유령 인구가 아니라고해서 시정안한것인가 이것을 시정과장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보고서 28「페이지」 이것은 조사위원께 질의코저합니다.



28 「폐-지」 제일첫번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간섭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서…….

이러한말이 있는데 이교육공무원이 전국적으로다가 이 선거에 공공연하게 간섭을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길바닥에 떨어진것이요. 정말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볼때에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래서야 공명선거를 할수있느냐?

여기에대해서 본의원 적어도 이교육이라는것은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선거간섭을 하는데 대해서는 의아심을 금할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신 조사위원회께서는 이교육공무원이 전국적으로다가 이러한 선거간섭을했다면 이경위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그다음 조사보고서 30 「폐-지」 에 금화국민학교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장의 이동이 영전이라고해서 전별금으로 30만원을 걷었다는데 이조사하실적에 과거의 그교장이 좌천했다고해서 전별금을 준일이 있드냐? 영전이라고해서 주었다면 좌천한 교장에게는 안주느냐? 아마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조사보고서 42 「폐-지」 에 김상돈씨 조재천씨…….

(「그것은요다음에해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그다음은 요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몇가지 질문한것을 본청 시정과장 그외에는 조사위원회에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경원 의원; 서대문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성암동 유령인구 문제에있어서는 간단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문제만 대개생각하면 이문제는 해결되리라

고 생각합니다.

성암동산 160번지에는 커다란 천막이 3동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있지않습니다.

반공청년이 약100명밖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성암동장 최영덕 사무장 구태성서기 허계 3인은 반공청년대표 오광직씨의 요청에의해서 이것을 4290년 12월 5일부터 동일 27일까지 27일간 거쳐서 집단적으로 기류계를 받았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 이기류계는 이것은 동적부가 있습니다.

동적부의 제출은 개인개인이 가지고 와야만 동장으로서 접수할하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집단적으로 열명이나 tm무명이 가지고와도 접수를 할수있는 것이냐.

법의 한계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 이 성암동산 160번지에 있는 이조사보고를보면 산마루택이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다면 천막셋밖에 없고 다른집은 없는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반공청년대표 오광직씨는 이 조사보고를 보면 장차 살것이라는 이러한 가상적인것으로다가 동적부를 동회에다가 제출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좀 말씀해주십시오. 이문제만을 알면은 문제는 해결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유령인구에대한 숫자는 조사보고에의하면 2천7백8십9명 이사람은 과거에도 산일이 있는지 사실 아까말씀들인바와 마찬가지로 산마루택이라고했는데 지금현재도 살고있지않는지 이것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문제는 해결될수있는것으로 봅니다.

○부의장 이종구;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具喆會 의원; 여러의원께서 진지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모르시는 점에대해서 조사위원으로서 말씀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우의원의 선거인구 2천7백8십여명 조작을 선거에 결부여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보고서에 표지에 선거간섭이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성암동문제 조사내용보고에는 선거간섭이라고한것이 아닙니다.

성암동사건 조사에 있어서는 정치면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하는 심경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있어서만 치중해서 하기로 했고 선거구 명부를 작성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잘보시고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둘째 물음에 148명이 투표를하지 않는데대한 선거가관련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148명이 현재 아홉째 집에서 살고있는데 조사단이 가서 물어본 그사람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마포지구에 적을 두고계신분인지 그리 이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본인은 안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증을 얻기위해서 했다고 대표자가 해서 기류부 또

동적부에 올랐는데 시민증을 가지고 있지않으냐 하니까 시민증이 없다.

안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48명의 투표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된것은 2,789명이기 때문에 어느분 어느분하고 안한것은 대표자인 그분의 답변에의해서 아까 거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8명을 현재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진한것은 사적으로 물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또세째로 그박준기라는 서대문 금화국민학교 4학년생이 인기투표 하자고 제의한데 대해서 4학년 아동이 이 선거에 대해서 할수가있느냐?

그것만 대질해서 사용여부를 알아보았느냐?

말씀했는데 어디까지나 아동에게대해서 대질을하고 싶은 이러한 조사위원의 심리도 아니고 담임이 순순히 당시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켰다고해서 라고 들어가고싶은 이러한 조사위원의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또주석에서 말한것은 어떠냐 하는데 운동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못한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특히 교원이 고급교원이 책임을 질수있는 교원이 평교원한테 주석 기타석에서 2·3차씩 들었다고한데 대해서는 이것은 선동이라고 아니볼수없는것입니다.

다음 노승환의원께서 동대문방면에서 추력을타고 20명씩 와서 투표를 현저동에서 수차 한테 대한 이유가 무엇이나 어떻게되어서 그러냐 했습니다마는 왜 그것을 안했느냐? 이것

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원이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힘이 미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개황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소를 얻는데 있어서 증명을해서 할수있지않느냐?

증명의근거는 무엇이나 했는데 계출의 자유가 있지않으나 물론 본조사위원회도 계출하는데에 자유를 가졌다고 인정합니다.

접수하는데있어서는 말단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확실한 증거에의한 증명을 가지고 해주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한사람이 가지고와서 계출하는것을 맡은것뿐인데 계출할수도있지만 계출한 연후에 여러가지 공문서등등을 잘못했다는것이 이 내용에 적혀있으니 그내용을 보아 주시면 잘알수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세째로 선거위원회의 결론을 현재도 부인하느냐.

부정하느냐애기인데 의원도 잘아시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선거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고 부정하다는것을 여기에다가 논설한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동적부 기류계의 동측에 의하여 정리하는데 정당하게했느냐 안했느냐하는것을 조사한것을 적당하게 처리해서 유령을 만들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밝혀노은것입니다.

그런점을 명백히 이해해주시기바라며 이원서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영등포관계원서가 영등포제6구 시의원 선거및동장선거간섭사건 이렇게되고서 성암동하고 결부하기때문에 이것이 이렇게된것입니다.

그러니 성암동사건과 영등포사건과 여러분이 주문을 읽으시면 잘아실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보고내용을알고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이 금화국민학교 사건 당사자인 교장 영전된데 대해서 전별금을 30만원 주었는데 좌천된데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는것을 아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 조사위원이 감독할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 이사건까지일으킨 그사람에게 이렇게 그 교직원들이 학부형을 울리고 부당한 잡부금을 징수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정신에서 기록했다는것을 특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간섭」 이라고하는것을 잘아느냐 이런얘기인데 그걸읽으시면은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했다고 하는것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은 불상사이다.

그러나 지방은 피하고……」

했습니다.

서울만얘기했습니다.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조사위원의 답변끝났습니다.

집행부 서대문구청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서대문구청장 이명세; 김경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항 2항겸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류계출을 개인개인이 하지않고 집단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대표되는사람이 제출할수있지않으나 하는 의도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적부를 낸다든지 기류계출은 물론 개인개인이 내는것이 원칙이라고도 얘기할수있지만 형편에따라서는 그대표되는사람이 집단적으로 내도 종래의 취급예에 의하여 무방하다는

견지하에서 취급했든것이고 또시방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이반공청년들이 대다수이기때문에 그개인개인이 내지못하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도하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동회또는 구출장소에 일괄해 가지고 냈든사실이 있습니다.

또3항에 무시공처가아니냐고 말씀이있는데 이지구는 높은 산도아니고해서 여기에 어느정도 우리가 주거를 영위할수있는 평평한곳이며 주택을 짓고살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항의 물음은 계속해서 여기에 거주할목적은 가졌느냐말씀이있었는데 이것은 제가알기까지는 이사람들이 여기에 자기영주지로 삼고 여기에서 살려고하고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방살고있습니까?」 하는이 있음)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반공청년들은 석방이후 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 상당수가 살고있고 따라서 이사람들이 그후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할만한 어떠한 근거지를 만들지못했기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집단적으로라도 자기들의 생활근거지를 삼어가지고 법적 근거지 법으로 자기들이 생활근거지를 얻어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도하에서 이성암동지역에 자기들의 영주지를 삼으려고하는 운동이 태동되었든것입니다.

그러면 그당시를말하면 아까 어떤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천막이 있지않으냐? 또따라서 2천7백여명의 대다수를 수용할 건물을 세울려고했었지만 일조일석에 세울수가없는 현실이었든것입니다.

여기에영주하려고하는 의도하에서 집도 짓고할려면 여러가지 시민이 행사할 기본권리……

근거를 갖지않으면 안된다고하는 의도하에서 여기에 동적 계를내고 기류계를 냈든것인데 그기류계를 낼 당시에 2천7백 여명의 전원이 여기에 살려고 했든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다음 시정과장 답변해주세요

○시정과장 김형익;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0일자 서대문구 선거구 위원장의 질의가 민의원 의원 입후보자 김산씨의 선거사무장 김재광씨의 진정서총인 원수 2,758명이 동적부에 올라있었고 역시 언평출장소에 기류계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유령인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본 결과로서는 말씀그대로 이사람들이 반공 청년이기때문에 사고무친 하고 우리나라국민으로서 이나라반 도안에 살고있으면서도 일정한 주소가 없고 생활근거지를 갖고있지않는 2천7백5십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서 제가 4월22일날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 계신 성암동에 현지답사하여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결과 4290년11월말일 현재 성암동 총동세대수 612 세대에 3,747명 12월말 현재에 632세대에 6,439명 세대수로 보아 20세대가 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약20세대중에는 지금 말씀드린 반공청 년이 한광호외 여섯사람을 대표로해서 도합 7세대사람들이 한광호외 여섯사람을 세대주로 해서 자기들 생활근거지로 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절차를 밟은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인정 하고 유령인구라고는 보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릴것같으면 이사람들은 아까 말씀드 린바와 마찬가지로 사고무친하고 자기네들 생활근거지가 없 었습니다.



천막이나 또는 동굴이나 역구내에서 엄동설한에도 벌벌떨며 살든사람들이 지난12월4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유지 만2천4백여평의 대부를 받고 12월19일날자로 「OEC」 원조자재를 제1착으로 우선 2동……

보통주택이 아니라 왜놈말로 「나가야」 라는 장옥이올시다.

또장옥 90동분을 받았고 이것을 받고는 이사람들로서는 아무근거가 없든사람이 자기네가 주택을 질대지를 얻고 건축자재를 얻어 여기에 용기를 얻어 반공청년 2,758명이 아까 말씀드린 일급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서대문 은평출장소에 기류계서를 제출한것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은 자기의 관하에있는 은평출장소에 기류계가 제출되었고 그기류계서에 의해서 근거가 확실함에 따라서 민의원의원선거법 80조에 의해서 이 말씀드린 2,758명을 선거인구부에 기재했든것입니다.

여기에있어서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 일부에서 이런 물의가 생겼든모양인데 서대문선거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이문제를 들어서 질의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로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해서 다시 4월21일자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든 결과 4월30일자로 중앙선거위원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선거위원장한테 이러한 회답이 왔습니다.

참고로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선 제393호

단기4291년4월30일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위원장귀하

## 선거인명부에 관한 질의의견

지난 4월21일자 표기질의사항에 관하여는 단기4291년3월1일현재로 서대문구의 관할구역내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당해투표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다.

이러한 공한을받고있습니다.

이상 좀 言才가 모자라서 의사표시를 잘못했지만 이것으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여기 질의에 두분이있는데 방동석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방동석 의원; 본의제는 국가사무에 속하는선거에 관한 부정이라든지 선거자체에 내포했던 불의한사실을 우리서울시의회가 조사했다는것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든지 서울시장의 감독관내에 있는 서울시의 일반행정에소속된 불법또는 무법 이런등등을 조사하자는데 우리서울시의회의 결의의 의의가 있었든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사위원 여러분이 극히 세세분분하게 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어서 보고를 해왔고 우리의회는 오전회의에서 사실그대로를 접수했습니다.

한데 지금 집행부의질의에 대한답변을 듣건데는 당해 서대문구청장 이명세씨는 극히핵심에서 이탈된 답변을 해오고있기에 본의원은 보충질의의 형식으로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보고서에 기록되기를 단기4290년 12월5일부터 동년 동월27일까지에 약22일간에 亶하는 사이에 산마루 턱에 정말 문자그대로 비산비야하여 한체의 건물이라든지 한체의 천막조차 없는데 무려 2,78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기류계하는 형식을 밟아서 당해서대문구청장이 접수하는데 결재를

했다고하는 사실을알고했느냐 불연이면 모르고했느냐 하는문제에 있어서보다 핵심된 답변이있어야 될것이다

그것이에요.

만약에 총선거를 앞두고 당해구청장이 하등에 근거가없는 지역에 일약 무려 2,780명에 달하는 인원이 집단이주해온다고 할진데 청장으로서 모르는바가 아닐것이고 몰랐다고해서 안될것이다.

그것이에요.

사람의 인원에 한사람의 숫자가크고 그네들의 이동권에 있어서 한사람의 분야가크거늘 문자그대로 비산비야라고 하더라도 이한사람의 천막조차없는데 삼천여명의 식구가어떻게 대량거주해 올수있습니까?

거주해옴으로서 雪寒三冬을 넘으리라고 보장할수 없었으리라고봅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조사위원이 보고한 그대로 유명인구에 틀림이없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보고서를 보았고 낭독하고 결과에 있었어 결론하는바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은 자기직권을 행사할적에 2,780명이라는 식구를 가상해서 앞으로 천막도지어지고 앞으로 합법적인 건물이 지어지므로해서 설한삼동을 넘어가서 양춘가절이 넘으면 이사람들이 다 와살리라고해서 가상해놓고 동대문남대문 용산 청량리에 있는 식구를 미리 받어드리겠다는 하나의 방편으로 행정조치를 했느냐않했느냐 하는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가지 질의입니다.

가상해서 기류계를 접수했느냐 가상치않고 기류계를 접수했느냐 기류계의 식구하고 한채의 건물이 없는데 삼천여명

식구를 어떻게 받어드리겠다고 하는 가공인물이 었드냐 아니냐하는것을 답변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불가부득이 본의원은 조사보고에 근거를 두지않을 수가없고 거기에 의하면은 동적부에 부녀자의 숫자가 5백3십여명이나 올라있는데 이것은 유세대의 유가족을 말하는것이다.

그말이에요. 내가 말한때에 반공청년은 문자그대로 반공을 했음으로서 오늘날 혈혈단신으로 혼자있는 사람들만으로 이것이 짐작이되는데 보고서의 부녀자의 숫자가 5백3십여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세대를 가진 자녀를가진 식구들이라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숫자가 있을텐데 자녀의 숫자가 530명이라 할것같으면 어린애의 숫자가 있을텐데 자녀의 숫자가있을것이다.

그것이에요. 반공청년은 남자를 말하는것이고 동적부에 있는 530명의 여자의 숫자가있다고할것같으면 남자여자 합치는 곳에는 반드시 자식의 숫자가 있을것이다.

그말이에요. 자식의숫자는 얼마나되느냐 그것이에요.

나는이것을 묻고싶습니다.

또셋째는 시민증교부대장을 경유한자가 불과 최윤식의 스물두사람 밖에없으니 이것은 절차상의 모순이아니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식구가 서대문에 살다가 남대문으로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막대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지않고는 이전이라든지 이주가 되지않을것이에요.

한데 최윤식의 22명밖에 시민증교부대장에 올라있지않고

전부가 누락되었으니 과연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한정 살다와서 있을사람들로해서 이와같이 기류계가 접수되었다.

그말이에요. 어째서 2,789명이란 인원중에 실지 22명밖에 시민증이 발급이 되지않았느냐 그말이에요.

넷째는 지금 현재에 천막세동에 불과 148명밖에 현존인물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서 비산비야에 천막하나 「하고방」 하나밖에 없는데에 2천7백8십9명이나 되던식구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지금 세채의 천막이 동일한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48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148명은 2,789명속에서 남은 식구나 그렇지않으면 우연히도 그 이후에 유령을 갖다잡어 넣은 이후로 우연히도 와서서 지금 남아있는식구나 그런얘기예요.

이렇게 네가지 정도를 전자 두서너분의 질의에있어서 부족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됨으로서 이사람이 보충이라는것으로 질의를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그다음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 의원; 한안건에 두번이상 발언못하기때문에 한번더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아까본의원이 조사단에게 다섯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했는데 이 조사위원들이 의회에 위임 사항에 대한핵심을 잃어버린것같습니다.

具喆會의원의 말씀이 조사보고서 표지에 나타나있는 성암동 유령인구기재 및 기타선거 간섭사건 조사보고서와는 선거 간섭은 영등포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과 좀 거리가 먼것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회에서 성암동사건을 조사결의할적에 김재광 의원에 긴급동의안에 대한안건이 서대문구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사건 및 기타선거간섭에 관한건 이렇게 되고있어요.

이내용이 성암동 유령인구를 구태여 고시해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선거에 간섭한것으로 내용이 충분히 발표되고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은 조사원은 의당 본 긴급동의안에 의거해서 유령인구 하나로인한 선거영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조사결정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유령인구2,789명에 대한 것만 중점을 두어서 선거간섭에대한 일절을회피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은 의당 조사위원회는 아까 본의원에 질의에 대하여 그러한 답변이 나올수 없는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본 조사단이 착수한 본조사가 그야말로 의회의 결의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조사냐 아니냐하는것을 의심안할수없는것입니다.

사실 조사위원회가 그러한것을 모르고 누락했다고 답변해주시면 모르되 질의하는 본의원에 양식문제를 들고 와서 답변했다.

그말이에요. 그런고로 본의원은 김재광의원이 제안한 조치를 아니할수 없는것이에요.

(장내소연)

(「질의만하시요」 하는이 있음)

그러니 조사위원회께서는 본의원이 아까 질의한 질의 제1항에대한 확실한답변을 다시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질의한것은 어디까지나 김재광의원에 대한 긴급동의안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또 이 조사단 자체가 김재광의원 동의안 자체에다가 중점

을 두어가지고 결의를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성암동 유령인구 문제가 선거간섭문제와는 결부되어서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되는것이에요.

당연이 148명 가운데에 한사람을 상대로해서 물어보았더니 그사람은 마포에서 거주하는사람이고 시민증발급을 안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에 분명히 조사위원이 가셨을 적에 148명이라는 인구가있다.

는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하면은 투표자한사람이 조사단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드라도 그이외에 146명이라는 반공청년은 있었을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그중에 아무라도 불러 가지고 투표여부를 물어보시는것이 조사위원의 권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금 마포에거주하고있다는 그사람하나만 불러가지고 당신이 투표를했느냐?

나안했소. 나마포에서 왔소. 시민증을 안받았소. 이것으로서 2,789명 반공청년전체에 대한 모든문제를 단정짓고 말았다.

그말이에요. 여기에 대한답변이 모호하기때문에 이것을 재 질의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그이외의 사람은 무엇때문에 물어보지않았느냐.

불어볼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아까 3항에대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제가 제3항을 이렇게 물었어요.

본유령인구가 5.2총선거시 투표한것으로 보느냐.

만일 투표를했다고하면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3항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4학년3반 박정국 어린이에게 물어봤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은 조사위원의 심정으로서 어린이를 조사할수없었다.

이런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올려야 하는것입니다.

이어린이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사위원들이 조사할수있는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裴라고하는 아동이 그얘기를 교실에서 발설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재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미안합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하고 간단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저 잠깐 의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답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집단등록 집단기류를 했다는 이말씀에 대해서 도의상 했다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적에 기류법이라고 하는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분에 관한법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관한법칙에 의거해가지고 법 정신에 근거를 삼아가지고 하는것인데 집단기류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인정할수있는 상식으로서 알고있는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하면은 기재되던 어떤 기류법에 의해서 효력을 적용했다면 그 각자의 편의를위하여 집단기류를 묵인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하고 또 이 성암동 유령인구 이문제는 지금 왜 나왔느냐 하면 5·2선거시에 비로소 유령인구를 기재한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선거때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이것이 물의 되어있는데 이것은 선거하고 법으로 관련이있다는 그런얘기가 아닙니다.

이밝혀진 원인은 선거를 계기로해서 발단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祭端되었다고하는 이 사실을 알아볼적에는 이행정의 줄렬로말미암아서 이러한사실이 벌어졌다는것을 우리가 생각안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하면은 성암동에 있어가지고 3천1백9십8명이라는 유령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령이라고하는것은 두가지문제로 해석할수가 있는것입니다.

즉 다시얘기하자면 전연 그지역에 살지않는사람이 유령적으로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기류계를 제출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성암동에는 살지않고 현재 서대문 각 구역내에 살고있는사람이 이중으로 어떻게 자기권리행사를했는지 이두가지 문제로 갈라진다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아까구청장말씀은 무엇이냐하면 성암동 2,798명이라는 이러한 인구는 살지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구청장으로서 2,798명이라고하는것이 성암동에 살지않았다고 할것같으면 왜 사실투표를할적에 예비표로서 그쪽으로다가 2,789명을 내보냈느냐 하는것입니다.

또한 규명하지않으면 안될 그이유를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가지고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니 2,789명이라는것이 서대문구청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살았는가 2,789명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중으로 권리행사를 시켰기때문에 그런것이고 서대문을구 사람들이 산재해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암동에다가 기류했는지 이것이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해결될줄아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두가지 문제에대해서 구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구; 그다음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김규원 의원; 먼저서대문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지극히 간단한문제인데요.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성암동산1번지에 이만한 2천7백여명이라는 사람들이 실지로 살았느냐 안살았느냐 한마디로 간단히 매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서대문구청장은 이자리에 와서 답변할적에 전연살지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이기류계라고 하는것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재론할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기류계라고하는것은 적어도 살면 10일이내에 기류계를 내는것입니다.

그러면 산연후에 기류계를내는법이지 살기전에 먼저 기류계를낸다고하는것은 이것은 상식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저히안되는것입니다.

기류계를 낼려면 구청장이 나보다도 더잘알줄압니다.

실지로 알고있다는것은 경유를해야합니다.

반장의 도장을 받아야하고 통장을 경유해서 관내 파출소를 경유해야하고 그리고 동을경유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경유의 절차를 받았느냐 이얘기입니다.

아까 집단이라고했는데 집단이라고하는것은 혹 있을수있는 문제이예요.

집단에서 이사람이 다 오지않고 대표몇사람이 올수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실지로 살지않는 사람이 앞으로 생각해가지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기류계를 내서 받아가지고 문제는 기류계를 받는것보다 앞으로 살겠다고해서 먼저 기류를해주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중요한 초점은 무엇에 있는고 하니 5·2선거에 들어가가지고 선거인명부에다가 살지않는 사람을 유권자명부에 기재한것이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지도 않는 사람을 유권자 각명부에다가 기재했다.

살지도 않는사람을 유권자로 허위로 만들어서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인명부에다가 기재했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살지도 않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해가면서 선거인명부에 기재했든사람이 권리행사를 해가지고 표를 던지는 이런것은 선거에서 보기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것을 이것을 동회는 물론 동회에서 했을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구청장이 알아서 적어도 한2·30명도아니고 2천여명 살지도않는사람이 기류계를내고 선거인명부에 기재했기때문에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것입니다.

이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유명인구 살지도않는사람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있다는 사실을 언제알았

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기류계를 내자면 반공청년이 적어도 몇해전에 여기에 석방되었다는것을 우리가 잘 알수있는데 이 성암동산 1번지 그 기류계를 낸 그기류의 전거주지는 어디로 되었는것이냐 이것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백여명밖에 살고있지않다고했는데 2천7백여명중 현재 살고있는 사람을 제외한 그나머지 사람은 어디갔느냐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경찰국사찰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서대문 구청장한테 질문한 요지에 대동소이한 질문인데요

성암동산1번지 여기에실지로 2천7백여명이라는 사람이살지 않았는데 형식적인 기류계를 제출해가지고 소위 유명이니 뭐니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물론 사찰과장은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찰과장으로서 실지답사한 결과 거주하지않는 사람이 몇이며 거주했든사람이 몇인가 그숫자를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2천7백여명이 다 산것을 확실히 실지로 다 조사해서 그것을 살수있다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증거가없다면 아까 구청장 답변대로 전원이 살고있지않는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전원이 아니라고하면 실지로 선거법에 60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는 이정당한 권리자는 실지로 몇사람이 살고있었다는 확증이 서는가 그숫자를 말씀해주세요. 그 나머지것은 다소 技葉的인 관계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이종구; 그다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규칙말씀하세요.

○김재순 의원; 저는 꼭규칙말씀 드리겠는데 좀 틀려도 용서해주세요.

조사보고서에 있는바와같이 성암동 유명인구 기재 기타선거간섭에 관한 조사를하시느라고 각위원께서 ○야불구하시고 조사한데 대해서 본의원은 개인으로서 참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무식 소치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선거간섭 즉 어느정도 정치에 관련되었다고 보는데 이조사 보고서가 쓰든 것 같은데 저는 쓰는데 무관심했었습니다.

왜 정치적문제이예요. 이런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조사위원인 具喆會 의원께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은 무엇을 갖다가 지적한것인지 그리고 또한가지는 의회에서 결의해서 조사를 위임했으면 그위원이 조사를 써야할것인데 본인아닌 제3자가 쓰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을 바로잡어 썩고썩은 행정을 바로잡는 이마당에있어서 조사보고서를 제3자가 쓰는것은 나는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具喆會의원이 답변한데 대해서 나는 이해할수없어요. 어디까지나 행정의 모순을 갖다가 시정하기위해서 이 보고를 했다면 이조사보고서는 시의원이나 기타 제3의회관계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서를 썼다고 하는것을 밝혀주는것입니다.

(「규칙이예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중구;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 토론에가서 할애기를 갖다가 김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다가 여기에대한 질문을 한다는것은 벌써 시민앞에 공표되어가지고 질의를 계속 도중에있습니다.

이러한 질의가끝난 다음에 이것은 결국토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조사보고를 정당하게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 조사보고의 의의가있지만 우리가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얘기하실 문제지만 지금질의시간에와서 그런말씀을 하는것은 정말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하시고 나중에 대체토론에 들어가서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여기에 아까말씀했지만 규칙이면 규칙질의면 질의를 해야지. 규칙질을 막섞어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대략질의는 끝여주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다음에 강을순의원만 질의하고 그다음은…….

(「안되요」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질의도중에 규칙이다 뭐다 나와서 혼란을가져오는데 좀 의장께서는 이 더운데 사회하시느라고수고하시지만 규칙발언으로나와서 규칙발언안할적에는 법적제지를 가지않으면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더운데수고를하십니다마는 이 점을 염두에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할려는 요지는 간단히 제가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의 대상은 서대문구청장 시정과장두분에게 질의를하겠습니다. 다시다른 의원의 질의에 다소중복을 피하려고합니다마는 약간지루하드라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1차

로 시정과장은 유명인구자체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한 그 자체를 주소로 인정한다 이것을 주소로 인정해가지고 이선거권이 부여되었다거나 선거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하면은 각구청장을 통해서 동적부를 내가알기에는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실지로조사를해가지고 만약에 거주치않는사람에게는 동적부를 제적하라는 이러한 지시를 한사실이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지시를 인정해서 그것을 선거위원회 그판정이아니요 가상으로한다고하드라도 동장에게 혹은 구청장에게 그 거주여부를 실지로조사를 해가지고 사는사람에게는 그동적부를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없는사람에게는 살다가도 없으면 제적하라 동적부를 제적하는이유는 무엇인가? 또한서대문구청장에게물은것은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또한 이반공청년이라는 여기에 수를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주지에 조사를 해본일이 있는가 만약 12월27일 각 시에 기류한 2,789명이 4월20일까지 15개개월 동안에 그사람들의 거주지를조사해본 사실이있는가? 또한 동장에게 서대문구관내에있어서 실지로 동적 또한 기류에 거주여부를 확인한뒤에 제적 또살지않으면 제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실질적으로 반공청년을 조사했다고하면 선거인구도 조사를해야될것인데 안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시 재론하는것같습니다마는 전부 ○○지않었다.

이 전부라고 하는것이 2천7백8십9명중에서 어느정도이나 가령 백명이나 천명이나 이것을 정확히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이 답변을 해주어야 본건 자체에 의원들의 질의에 납득이 올것입니다.

이렇게 어물 어물 답변하는 식으로 나가서 전부는 살지않고 일부는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조사 위원 또는 동장에게 그 동적부 제적 살지않으면 제적하라 그 제적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느 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동장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것인가 이것을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증 발부에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시민증은 하나 교부 받자고 하며는 통장 반장 또한 관계 파출소 또한 동장인을 받아가지고 실지 경찰서 사찰계에서 조사해가지고 시민증을 발부한다는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증을 발부한것이나안한것이나 이것을 제가 물은것으로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자 530명이 있다면 이분들은 반공청년들의 가족인가 만약 530명이 거주했다고 하면 가족 혹은 도구를 혹시 본 일이 있는가 530명 반공청년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서 거주 않하고 다른데로 선의로 어디 출장 정도로 갔는지 530명 부녀자가 살고있는데 혹시 식량같은것 또한 가족 도구가 있었느냐 이것을 사람이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구청장 내지 시정과장이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질의를 하시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중 삼중 질의를하는데 남이 질의한것을 생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회 의원; 서대문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단기4291년도 2월12일 서대문구청장 은평출장소장 각동장 그후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조사 작성에 관한건

내용의 골자를보면 유인물에 23頁에 있습니다.

2에 3월1일 현재로 60일 이상 (단기4290년12월31일 이전 거주자) 당해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계속하여 현재 살고있는지 없는지를 실지 동적부와 기류부등을 대조하여 명확



한 증빙성있는 공부에 의하여 조사되어야함.

구청장이 각동장에게 또 은평출장소장에게 하달공문내용에서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요것을 내가 말씀 드리느냐하면 시정과정이 답변하기를 시선거위원회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질의를 한결과 3월1일 현재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자에 한해서 선거를 할수있다.

이러한 단언을 받았는데 이러한 답변을 하였기때문에 이 문구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0일이상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계속하여 현재 살고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확히 조사하라는 이러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고다음에 6입니다.

3월9일까지는 작성된 선거권자 조사서에 의해서 각 국민반별로 실지 대사를 행하고……

국민반별을 통해서 실지대사를 하라는 이러한 문구가 여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누락 중복 또는 잘못 기재되어있는가를 확인하고 동 확인된 조사서를 전면적으로 관계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그 마지막 정비를 할것 이러한 중대한 문구가 기재되어있는것입니다.

고아래로 내려가서 7에 「가」 각국민반장 입회하에 매세대에 대해서 개인별로 이를 실시케할것.

「나」 실지대사는 조사서 전면에 걸쳐누락 또는 중복이 없도록 잘 밝혀야 함.

이러한 중대한 문구가 명시되어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각동장에 하달된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문 자체는 구청장 임의로 각동장에게 시달되

였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선거위원회에 지시에 의해서 하달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내지 부시장의 통첩을 받아가지고 하달했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께서 지적했습시다라는 동회에 기류부는 작성되었는지 그동적부에는 작성되어있지만 동적부에 그사람이 기재된 사람이 장시일 동안 거주하지않은 사람은 동장이 임의로 동적부를 제거할수있는 권한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앞으로 장차 살 예정이라고 하는 예측하에서 이런 사람을 동적부를..... 받아주었는데 언어도단이 아닌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서대문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증발급에 있어서 성암동 동회에서는 23명밖에 경유를 안했습니다.

또 출장소에서 150명으로 또한 경유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어디서 착각이 난 것인지 동회에 23명분이 사실 확실한것인지 출장소에서 150매를 경유한것이 사실인지 이 여부를 또한 확실히 답변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장에게 묻겠는데 서대문경찰서에 가보니까 사찰계에서는 시민증발급에있어서 15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具喆會의원께서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경찰서 사찰계에서 153매로 발급되어있는데 이 시민증 발급된것을 보면 대부분이 반공애국청년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원본과 부분이 있는데 자기 모인도 안찍힌 이러한 백지에다가 몇글자 나열해가지고 시민증을 발부한것을 명백히 보았습니다.

또 시민증을 한개를 여러분이나 어떤사람의 부탁을받어가

지고 그사람의 국민권을 부여하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치밀한 조사를 가해가지고 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시민증을 발급하는 자체가 경찰서 사찰계에서 하고있는 것은 이 행정사무를 가장 경찰서 사찰계에서 발급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다만 공산당들이 이 시민증 발급 우려가 있어 사찰계에서 이러한 공산당에게 시민증을 발급하지않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 사찰계에다가 의뢰한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동회에서는 23명분을 발급했고 출장소에서는 150명분을 발급하고 서대문경찰서 사찰계에서는 153명분을 발급한 이유를 경찰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153명분에 내용을 보니까 64명이 반공애국청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분이 반공청년입니까 혹은 이분이 가족입니까 하니까……

신청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반공청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반공청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3사람이나된 사람이 반공청년으로 석방되었는지아닌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자꾸 이중 삼중이 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의원; 평상시에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항상 말씀하시는것이 의장께서 지금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또 너무 질의하실분이 많기 때

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복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이끄러달라고하는 말씀을 이사람도 누차 들은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에 신사회의원은 조사단에 조사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이러한 양반이 지금 나와서 조사보고를 하는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당국에다 질의한다고하는 말씀을 하신것같은데 조사위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서 상식으로 판단할적에 우리가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잘해달라고 이렇게 위탁을 했다면 우리가 조사위원에게 이러한 사실이 어떠냐고 우리가 질의를 할것인데 자신이 나와서 조사한 사람이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것은 조사한 결과가 요컨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건자체를 신중히 처리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내용을 여기에 와서 조사보고하는것인지 질의를 하는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점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조사위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지않는것이 조속히 처리가 되겠으니 조사위원께서는 이자리에 나와서 질의하지않는것이 빨리 끝난다는것을 이사람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드립니다.

○부의장 이중구; 질의는 대개 대동소이하니 답변을 듣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답변을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나와서 서대문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대문구청장 이명세; 각의원께서 질의를하신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못해서 또한 질의를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것은 각의원께서 각항에 걸쳐가지고 질의를하셨는데 일일이 제가 솔직히 말씀하자면 질의하신것을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빠진점이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먼저 방동석의원께서 물으신 이 반공청년에 대한 동적부와 기류계를 작성할적에……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이 2천7백여명에 대다수를 기류계에 올리므로써 어떠한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5.2선거하고 관련성을 맞는 의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반공청년의 정착지를 국가적 견지에 입각해서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아까 미급하나마 각의원께 말씀을 들었는데 시정과장으로부터 여기에대한 말씀을 들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이사람이 그 주소지를 든다는것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련을 맺어가지고 한것이 없다는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각의원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 반공청년이라고 한다면 실지 조사를해보니까 대다수가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반공청년하면 우리가 언필칭 그석방된 그 사람들의 전체를 반공청년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남자도 있을것이고 여자도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여 마지않읍니다.

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석방되어가지고 자유에 몸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만큼

그동안에 자녀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언필칭 이것을 반공청년이라고하는 점을 강의  
원께서는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증에 대해서 역시 소관사무가 아니라고해서 책임을 회  
피하는것이 아니라 사실과 마찬가지로 시민증의 교부를 신청  
하는데 동회에서 신청매수와 출장소에 매수와 경찰서사찰계  
매수가 꼭 맞지않으리라고 꼭 맞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째에 대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대충 말씀드리면 2  
천7백명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그당시에 있었다고 하는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한것 역시 이 반공청년들이  
동적부에 기재가되고 동적부에 기재가 되었으므로 선거인 명  
부에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이 살지않는데 실지로 살지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구청장의 입장에서 그동적부 기류증을 제  
자신이 실지 작성 안하는것은 아마 전의원께서 잘 아는 사실  
인 동시에 그 당시를 말하면 5.2선거 사무 준비에 임할때입  
니다.

이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인명부는 법률  
로 확정된 기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때에 기류부에 기류를 동장 책임으로서에 받고  
있는 동시에 법에 의해가지고 확정 기일이된 그 당시에 정말  
로 투표할 사람이 실지로 투표할 사람이 실지로 살고있나 안  
살고있나 하는것을 그 명부에 확정을 해가지고 투표에 임하  
게되는 사실이 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그 당시의 이 문제 역시 과연 이것이 그당

시에 명부 확정될 당시 까지 2천7백명이 들어 왔느냐 안들어 왔느냐 하는것이 이것이 논의될문제인것입니다.

해서 명부 확정되기 전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기별을해서 이반공청년의 특수성이라는 점을 열거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옳느냐 안주어야 옳느냐 이것을 질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위원의 회답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끔 했다는것은 김규원의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을순의원께서 실지 감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여기에 그 경위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김규원의원이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 실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또 따라서 그 당시에 선거사무에 분주했기때문에 동이든지 출장소에서도 일일이 내사를 못했고 다만 명부에 등기된 사람이 틀림없이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는 사람이냐 하는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명부조제 확정기일전에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했다는것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만큼 그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사회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역시 3월12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은평출장소장 각동장에게 보낸 그공문의 내용이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한것이냐?

구청장 자의에 있는것이냐?

이 문제는 선거명부조제의 책임을맡은 구청장의 자의로 출장소장 동장에게 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며 그다음에 시민증 발급사무에 관한것은 제 소관사무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 들인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것이

발급매수가 동일치않으리라는것을 제가 추측하고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그러면 이사람들이 전거주지가 어디냐 하는말씀이 계셨는데 이사람들은 전거주지라는것이 법적으로 없다는것을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석방되어가지고 행사할수있는 거주지는 성암동산1번지에 정함으로 비로서 법적으로 전거주지를 정했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니 만큼 그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 사찰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사찰과장 김성섭; 벽두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두가지만 들이겠습니다.

첫째 아까 어떤 의원께서 시간이 정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대상자가 되어있는 사찰과장이나 혹은 관계자가 미리 대비하고 있지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한달에 한번씩 있는 군검경수사합동회의가 같은 시간에 대검에서 열리고있습니다.

경찰국을 대표해서 출석하고있는 사찰과장은 중간에 보고를받고 오느라고 온것이 한15분동안 여기에 늦게 되었습니다.

또 따라서 여기와서 조사한것을 보았을 뿐이고 경찰국에서 사전에 여기에대한 연락이 없기때문에 또 이 도중에 왔기때문에 관계서류를 가지고오지못한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5.2총선거를 위시해서 시의원 보궐선거에있어서 제가 사찰과장으로 있는한 되도록이면 자유분위기를 보장해보자 하는것을 제 생각만은 가지고 왔는데 시의회에서



이 선거문제가 제안이 상정되어 가지고하는데 이자리에 나와 스게된것을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이 안건에 대해서 두가지로 제가 해석하는데 하나는 성암동 사건에 아까 김의원께서 얘기한 산1번지에 2천7백여 명에대한 유다인구라고 추측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사찰과장이 해보았느냐 하는 얘기와 또 하나는 이 영등포 시의원 보궐선거에있어서 은로국민학교의 강연장에있어서 경찰이 선거를 방해했다하는 이두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또 직접 현장을 관할로 가지고있는 영등포서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구청장과 서장님이 자세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다는 사찰과장으로서 아는 범위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것만을 여러분께 답변해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성암동 사건에 있어서는 실지로는 사찰과장으로서는 조사가 못되었습니다.

명백한 답변해드립니다.

이것은 적어도 서울시내 민의원선거 유권자는 79만7천8백 5십명 약 80만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방대한 유권자를 서울특별시에 단한명인 사찰과장이 그 확실한 실재의 인물이나 하는것을 그 시내전체에 巨해가지고 사찰과장이 실질적으로 조사할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80만에 달하는 유권자가 실재에 인물이나 이것은 각 관계청의 보고에의해서 결국 취급한것뿐이라고 대답하고싶습니다.

또 특히 성암동 문제에있어서 그당시에도 문제가 지금 이 러난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위원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시선거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게 당시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유권자라고 인정해서 투표하겠끔 되었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은로국민학교 경찰관 방해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고 당시에 참관했던 사람들은 저도 현장에 못갔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선거기간중에 5·2선거에는 많은날이 하루에 80여개 전체 숫자가 일천여개에 달하는 정견이 개인 합동발표 이 굉장한 숫자에 달하는 선거연설가운데에 사찰과장이 일일이 현장을 볼수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날에 80여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에있어서도 제가 현장을 가지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화되어가지고 사회에 「크리스옌」 된것은 5월 27일자 경향신문 3,986호 여기에 깨어진 선거분위기라고하는 커다란 「타이틀」 을 가지고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 경찰서에서 보고를 받았고 사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머리에 어느정도 기억에 새롭기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경찰서장의 보고에의하면 그당시에 영등포구에는 세분의 시의원 입후보가 있었는데 일자순을보면 5월 19일날 22일날 25일날 30일이 이길훈씨가 신청이 그 학교에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장영일씨가 4월20일 24일 또 그다음에 유열씨가 그학교교사를 사용케 되어있었는데 장영일씨가 관계 응원 찬조 응원단이 와가지고 이 장소에서 강연을 할려고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지의 숙직 선생은 이것은 도저히 교장한테 기히려락되어있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선거 강연을 할수없다고해

서 문을 구지 열지않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측에서는 문을 열라고해가지고 신문에 발표된것을 오히려 분석해서 본다면 이선거 강연을하고있는데에 가서 40여명의 무장경찰대가 총뿌리를대고 이 선거강연장에서 나게끔했다.

둘째로는 이 장영일이와 또 찬조강연을 하려든 김상돈 조재천 민의원의원은 이것을 또한 이것이 현행법이니 혹은 불법집회니 해가지고 연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또 세번째에는 「마이크」를 땅에 떠러트려서 사용불능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세층으로 논을수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사 당시의 서장의 보고에의하면 또 거기에 관계되었든 사람들의 말에의하면 무장경관들이라고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관할파출소의 비무장경관이 자기관할이기때문에 두명이 참관을 했고 영등포서의 형사주임을하고있는 「김응습」 경위이하 사복형사가 두명해서 5명의 경찰관이 있는이외에는 무장경관대는 한명도 없었던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에 학교문을 열고 연설대를 시설하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문도 열지않고 이르기때문에 여기에 총뿌리를 대고 연설하는 것을 끄러내렸다는것은 전연 날조의 사실입니다.

또 세번째의 「마이크」를 떠러트려서 사용불능 운운의 얘기는 또한 「마이크」를 그 자체가 시설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떠러지고 안떠러지고 사용불능 여지가 없겠끔 되었다는 보고가있습니다.

현장을 보지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뭐라고 네 눈으

로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경찰서장이 물론 정확한 보고를 했다고 또 당시 참관했던 관계인들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듣드라도 사실인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허위 기사를 낸데 대해서는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일시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 선거법 73조에 어떤자를 당선시키고 어떤자를 낙선시키기 위한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이문제에 73조는 지방선거법 지방선거법에 있어서 74조에 이 특별규정이 없지만 여기에 해당되어있지않는 조문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간접적으로 허위기사에 있어서는 시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처벌을 받을수있다고 법적 해석을하고 그래서 그 관계 경향신문사에서는 어떤놈이 이러한 허위 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신문사의 위신을 遂落시키고 사회의 물의를 이르고 또 허위한 기사를 냈다고해가지고 사회국장이나 혹은 편집국장이나 누차 경찰서에와서 사과의 뜻을 표하고 또 시말서를 쓰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도록 아무쪼록 平隱리에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문건이 시의원들 조사서에도 붙어있습니다.

이런 경과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했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아 잠깐 기다려주세요.

시정과장 답변해주세요.

○시정과장 김형익;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동내에 살고 있을때에 동적부를 정리하고 살지않는 사람을 동적부에서 제적하도록 시달한 일이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행동적규칙은 지나간 4288년4월18일자로 동제 실시가 된이후에 88년8월27일자로 규칙 74호로서 제정된 동적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 동적을 가어다가스리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동적이라는것은 동제 실시하기전에 동회때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동적부라는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를 두고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동제 실시가된 연후에 법에 근거를 두기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동적규칙이라는것이 생겼읍니다.

동적규칙 제3조에 가볼것같으면 동장은 매달 한번이상 일회이상 그동내의 주민들의 거주 실태를 조사해서 동적을 정리해라 그리고 10조에 가볼것같으면 그 동내에서 살다가 살지않는 동민이있으면 통반별로 또는 번지순에 따라서 동적부를 정리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 싶이 지나간 선거기간중에 지금 앞서계신 의원 몇분도 저한테와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동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 선거인 조사서작성등등의 일때문에 참 밤낮을 가리지않고 일하고있는데 너무나 그직원들을 혹사하고있지않으냐 이런말씀이 계셨어요.

때마침 그런 참 바쁜 시기라해서 매월 한번 이상 그 동내 주민의 거주 실태를 조사해서 동정을 조사해라 규칙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했읍니다.

설사 바쁜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 성암동의 2천7백8십9명에 대한 반공청년을 갖다가 동적에 올려놓고 또는 기류에 올린것은 어디까지나 정

상적인 참 종래에 해오든 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반공청년으로다가 석방이 되었고 그후에 다시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므로서 아무데에도 주소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들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살겠읍니다하고 동적에 올리고 또는 기류에 올렸기때문에 동장으로서는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갔다가 너 왜 동적을 정리를 안했느냐고하면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하는 저희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암동의 2천7백5십8명에 대해서는 동적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주소를 가지고있지않다는 그야말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가지지못하고 주소를 가지지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끔 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동장도 그러한 뜻에서 동적을 정리하지않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강을순의원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다음 具喆會의원 말씀하세요.

○具喆會 의원; 답변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문학우의원이나 김재순의원께서 평시 의회운영에있어서 정의를 위해서는 최선봉을 스고 부정을 위해서는 앞질러 칼을 뽑는 두의원께서 이 본회의의 명예의해서 조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집행부의 무능하고 불법한 처사를 규명하시는것이 아니라 조사위원을 규명하는것같은 감을 주신것은 혹시 일시적인 흥분의 착오로 말씀하신걸로 생각해서 마지않읍니다.

그다음 아까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말씀을 할때에 가급적이면 시의회의 직능상으로 보아서 사무적인면이나 행정적인면을 조사했고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 피했다고 했습니다.

또 결과가 선거를 그르쳤다고 결론이 뚜렷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암동 2,758명이 선거를 했느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주민이 불과 8백여명밖에 안되는데 2,758명을 합해서 3천6백여명이 됩니다.

투표한 수가 지금 명확한 숫자가 있습니다만 2천5, 6백명으로 되어있을것입니다.

이따가 정확한 숫자를 알으켜 드리겠어요.

원주민은 8백여명밖에 없는것이에요.

나머지는 이 유령인구가 투표했다고 증명해주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실히 말씀해드립니다.

그외에 만약에 조사서에 미비하거나 또는 질문하시는데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조사서를 만들기위한 기초조사서가 다있습니다.

그런관계로해서 이 이상 허다한 부정이 공무원의 조작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의원의 위치로 여러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를하는 방도가 막연하기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보고못해드리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김동순의원 질의해주세요.

○김동순 의원; 기히 선거가 지나서 3朔이 經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여○이 남아가지고 오늘 귀한시간에 여러가지로 과거에 과오가 있다면 이것을 시정할것이요. 장래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않기 위하여 지금 질의를 몇가지 하겠읍니다.

사찰과장 사적으로 미안합니다마는 공적으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반공포로라고하는것을 현재 대한민국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약 월여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혁명군이 정부와 대결할적에 서울시에 반공애국청년이라는 이름으로서 시내에 수십만매의 우리를 인도네시아 전선에 보내라는 뼈라를 뿌렸는데 이것이 과연 그 반공청년회의 자연적인 애국심으로서 벌어진것이나 혹은 대한민국정부의 애국단체라는 그 대한민국의 현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그사람네들 즉 정부요인이나 그방면사람들이 반공단체를 이용해서 반공애국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냐 지금 방금 질의한 성암동사건도 과연 2천7백5십8명이라는 이 인원이……

그 2년전 우리지방의회 선거때에 각구에 산재되어가지고 그사람들이 47명을 위해서 투표한 흔적이 남아있읍니다.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제기동 제선거구에도 반공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있고 그날 투표한 흔적이 아직 서류상 남아있을것입니다.

그리고 52선거를 불과 수삭 앞둔 91년 1 2 3월에 비로서 어떤 두뇌가 명철한 사람이 이 반공청년이라는 모○ 적지않은 숫자에 착안해 가지고 서대문 을구에 이기봉씨가 출마하는데 이용을 할 그의도에서 급작스럽게 거주지를 변경시킨것이 아니냐.



양심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사찰과장께서는 과거 그사람들의 거주상태를 조사않았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이 2천7백여명이라는 적지않은 숫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면 특히 이분들에대한 사상적 방면이나 사찰견지에서 사찰과장의 책임하에 사찰 않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과거에도 이 반공청년중에서 간첩자가 나온것을 제가 기억하고있읍니다.

신문에 발표된것도 알고있읍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이 반공청년이라는 이사람들을 이승만박사대통령각하께서 전부 석방을 함으로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위대한 정치가가 있구나 하는 그 선전 고시야말로 백% 올랐다고 봅니다마는 이사람들을 연년이 잔치를 베푸러 주는데 금년에도 창경원에서 석방5개년기념일인가 경찰관주최로서 하고있읍니다.

이것은 경찰로서 이사람들의 무슨.....

○부의장 이중구; 성암동사건에 대한 질의를 다시 성암동사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계속) 그러면 5 2선거가 끝난다음에 창경원에서 거대한 비용을 경찰에서 정보비로서 나왔는지 어떠한 방면의 예산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석방기념행사를 해주신 그 의도는 과연 5 2선거때에 성암동에서 3천표 투표해준 그 대가로 한 그 위로연이 아니었든가 알고싶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을 저는 알고싶읍니다.

특히 성암동에서 동아일보기자가 구타를 당했는데 권모라는 38세된 사람의 3명을 서대문서에서 사건발생이후 약 이틀후에 자수형식을 취해가지고 이기자를 구타하고 카메라를 강

탈한것은 강도행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불구속 송청할수있는것인가?

성암동사건에 한사람의 반공애국청년이 열세번 투표했다는 것을 자기자신이 얘기하는것을 나는 듣고있습니다.

어떤 반공청년이 동창회에 늘 나오는데 았나왔어요.

어째 았나왔느냐 하니까 5 2선거때에 열세번을 투표했으니 동창회에 나가서 여러분앞에 이 얼굴을 보일수있겠느냐 하드라 말어요.

○부의장 이중구;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김동순 의원; (계속) 여기에 있어서 과연 2,758명이 한번씩 투표했느냐 하는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난다음에 서대문구청장이 경기도 모국장이 된다는말이 있는데 서대문 구청장은 52선거에있어서 어떠한 공적이 있길래 이러한 영전이 되는게 성암동유다투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토론시간이 아니예요.

○김동순 의원; (계속) 고만하겠습니다.

사찰경찰의 책임자로 계신 김과장께서 반공청년을 이렇게 애호를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는 장래에 이 사람들에게서 만약 경찰사고가 일어난다면 장래 범죄자가 될때에 과연 공정무사하게 체포해서 송청할수가 있겠느냐 장래 경찰행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것을 나는 여기에서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다음 이동률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동률 의원; 제 발언통지가 13번으로 놓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자는것이 끝것같습시다만 기히 발언통지서를 낸것이니까 한두어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저하는것은 우리의회 조사단의 아까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기때문에 조사위원한테 하나 무르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에있어서 성암동유다인구기재및 기타선거간섭에 관한 조사보고라고 했는데 조사위원 具喆會의원께서 이것은 선거간섭에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 동적부 유다인구에대한 문제라 말씀하셨고 또 방동석의원이 나와서 질의할때에 이것은 선거간섭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 이런 질의를 했어요 해서 방동석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냐 했드니 선거간섭이라면 의회에서 논의할수없다는 말씀을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해서 하나 묻는것입니다.

나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할때에 확실히 선거간섭이라고 여기에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김재광의원 긴급동의안으로 채택이 되여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와서 거두절미하고 가운데토막만을 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핵심을 잡아서 책임추궁을 할것이나 하는것을 제가 의문시하기 때문에 하나 간단히 묻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다음 최인호의원 말씀해주세요.

○최인호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집행부의 해당구청장에게 한마디묻고저 하는것입니다.

확실히 해당구청장은 답변에서 성암동산1번지에 반공청년이 2천7백여명이 살고있었다는것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류계를 접수하는것까지는 이것은 있을수있는 일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에 문의해서 계속 6개월 살고있으면 주소로 인정할수있다는 이것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주소와 주소라고하는것은 민법상에 엄연히 명시

되어있는것입니다.

그사람이 기류를 해서 주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밥을 끊어먹지않고 생활근거지로 하지않으면 그 주소가 주소의 기능을 발휘못한다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자신이 기류를 앓했다고 하더라도 밥을 끄러먹는 그곳이 거소라고 할진데 주소가 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않은 사람에게 주소라고 인정했고 이사람을 투표권까지 주었다는것이 확실히 선거운동에 참여한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하기때문에 이것을 시인하느냐 하는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찰과장에게 묻습니다.

사찰과장께서 성암동사건이 오늘날까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답사를 앓했다는것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선거에 있어서 북한괴뢰의 김일성도당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책동하는것 공작사를 가지고나오는 이때에있어서 이러한 반공청년이 살지않고있다는 것이 지상에 공개되며 국민의 의혹을 사게된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살고있느냐 안사느냐 하는것을 의당히 사찰책임자로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현장답사를 앓했다는것은 직무상 하나의 태만으로 인정하는데 태만으로 시인하느냐 하는것을 대답해달라는것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이걸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집행부 사찰과장 답변해주세요.

○시경사찰과장 김성섭; 먼저 김동순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김동순의원은 경찰출신이라고 또 경찰 재직 중에 상당히 역량이 있고 혁혁한 그 사적을 남긴 김동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는것을 나는 옆에서 듣기에 극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인도네시아 혁명군을 반공청년들이 의분이 넘쳐가지고 원조를 해줄려고 데모를 했다든지 이것은 사찰경찰이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그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적어도 동남아세아의 거점인 인도네시아에 소련의 마수가 미칠때에 민주진영 세계각국에 뜻있는 청년이 이 의용 의거하는 혁명군에 보내려고하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청년만이 그런 의거심이 없으리라고 단언할 수있느냐 이것이 단순히 경찰이 이용했다고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또 사법 사무에 가장누구보다도 능통하고 계실 김의원이 반공청년을 취급하는데 경찰에서 특히 불구속을 했다든지 특별한 우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나 이것은 사찰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경찰이란 원래 검찰청의 보조기관 이기때문에 한사람의 피의자를 구속한다든지 혹은 불구속으로 취조를 한다든지 하는 일거일동이 검사 지시밑에 하기때문에 관대한 취급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것은 사찰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반공청년에 대한 한가지 성암동반공청년을 실지로 나가서 조사해보지않았느냐 조사못했다고 아까 확실하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중심으로해서 볼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적어도 80만 유권자를 선거를 단기간에 실시할때에

그 관계 부문이 전부 있기때문에 대한민국의 특별사정이라고 할까 선거에 부정이다.

혹은 간섭이다 하는것이 어디가 사찰경찰이 주관 사무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지 사찰과장이 이 선거를 중심으로해서 이 사람들을 쓰고 본다든지 유권자의 한사람 한사람을 여당이다.

반공청년이다 이렇게 구별할수없는것입니다.

그것이 개중에 나쁜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반공청년은 수많은 이북 공산당에 못 견디어서 6.25때에 나와가지고 포로로 되어가지고 있던것을 대통령각하께서 세계적인 일대 용단을 가지고 이 수많은 중에서 때로는 인도라든가 남미같은데로 자원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 가운데에서 자유 대한의품안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 우리대통령각하의 용단으로 이것이 허용되었고 동시에 그 석방순간으로 부터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권을 가졌기때문에 이 국민의 일대 큰 권리라고하는 이 선거권의 행사에 있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사무적인 절차에 있어서 동장이 어쩡다 구청장이 어쩡다 혹은 관계 선거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유권하냐 안하냐 혹은 실제있는 자는 그 세부로 담당한 기관이 많이 있었기때문에 사찰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사상적으로 의심했느냐 안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평소에 네가 사찰을 잘하고 왔느냐 하는 얘기라면 오늘에 질문하고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사찰사무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다면 별도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거사무에 있어서 오늘 질문의 대상과 제안이 되어있는 유권자로서 과연 정당하냐 인정할수 있느냐 또 행사

할수있는 사람이 행사를 하였느냐하는 이 질문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이것으로서 그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은 이로서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끝났으니까 토론으로 드려가겠습니다.

토론은 시간 관계상 한사람씩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상 어제 다소 의장께서 모순된…… 토론중에서 한 사람씩 준다하는것을 제안하지마시고 원의로 물어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러한 한사람밖에 안주겠다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의로 한사람이나 두사람이든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중구; 여기에 일일히 원의로 물을수가 없고 여기에 찬부가 네분이 들어왔습니다.

네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석의원 반대의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이 안건이 전번 회기에 김재광의원의 긴급동의로서 제기된 유명인구 기재사건 기타 선거에 관한건이라 그래서 이 안건에 근본을 두고 여기에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었고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오늘 이시간까지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본의원도 조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있었기때문에 때로는 어색한 말씀이 혹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은 조사위원회의 내용이 올읍니다.

조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의 말씀가운데에도 언급을 했지만 양반으로 논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사위원이지만은 사실상 성암동 조사에는 참여를 못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두가지로 생각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를 생각해볼수있는것이고 또한가지는 이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생각해볼수있는 문제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해본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상 각계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로 본의원은 이것을 법리적인 면에서 이 행위 자체를 법리적인 면에서 약간 검토해보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문제가 되어있는 반공청년은 국가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반공청년은 자유 대한의 품안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이 반공청년에게 법률이 용서하는 한도 내에서 우대를 해야하고 또 받을 입장에 있는것이 반공청년인것입니다.

이와 문제를 좀 달리해서 우리 인간이 가 잘수있는인간이 생활하는데 가 잘수있는 주소라고 하는 하나의 요건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주소라고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민법에 주소라고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주소를 가져야되고 이 주소는 자기 자유로히 가질수있게 되어있는것입니다.

참고삼아서 관계되는 조문을 말씀드린다면 민법 21조에 각인의 생활의 본거를 기 주소로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 본거지가 주소로 된다는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다음 주소를 알지못할 경우에는 주소를 가지지못할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면에서 거소의 조건과 주소의 조건이 틀린다고하는것을 우리가 알수있습니다.

반드시 알고있는데 반드시 기거를 하고있는 이런데가 주소가 될수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것이 아닙니다.

거소와 주소가 엄연히 다를수가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의상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가장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민법 24조에 있는것입니다.

민법 24조에는 어떤 행위에 관하여 주소로 선정할때에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라고 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면에서 볼때에 이 주소라고 하는것은 국민 스스로가 자유로히 선택할수있는 하나의 권한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공청년이 주소를 어디다 가든지 간에 반공청년 자신이 결정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진부를 가질수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주소를 정하는데에 까지의 절차로서 하나의 기

류계라는 절차를 밟아서 주소를 정하게된다.

그러면 이 기류계라는것은 접수를 하므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기류계라고 할것을 서면으로내면 이것을 검토한다든지 조사를 해보아서 허가를 한다든지 승인을 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여기서 기류계하겠소하고 제출서를 내면은 그것으로써 그 서류가 접수되므로써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반공청년이 성암동에다가 주소를 가지겠소하고 기류서를 낼적에 그 사무를 담당하 동회에서는 구청에서는 그 기류계를 받을수없다고 거부할 하등의 법이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계출에 의해서 이것을 접수하고 이접수가 되므로써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동적부에 기재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중으로 주소를 갖지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주소를 가지면 안된다고하는 조문도 명백치 않으려니와 이중으로 주소를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또한 이 조사면에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또는 선거법에 비추어서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18조에는 엄연히 거소의 요건이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주소의 요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18조의 명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6개월이내에 그 정해 놓은 장소에서 주소를 가진 사람은 선거권을 갖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소라고 되었습니다.

주소의 요건은 아까 민법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정하게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소의 요건이 구비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질 수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러한 기류계를 내게 이러한 수속을 하지않았느냐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령 어떤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소를 옮겨갔다 옮겨갔다고 하는 절차에 모순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용허되는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다는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규탄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24조의 정신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반공청년이 선거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거에 행위 또는 선거법에 제정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서대문 성암동에다가 주소를 갖었다 주소를 가질 절차를 밟았다.

이것이 하등에 법리적으로 규탄을 받을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반공청년이 성암동에다가 일시주소를 정해놓고 그러므로 이중으로 투표를 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또한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나는 꼭 이중으로 투표를 했다고하는 사실이 증거로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거법으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법률의 그 體를 가질수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이 조사보고서 내용에 있어서는 이중투표를 했다고하는 이것은 증거가 나타나 있지않습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볼적에 소관구청장이나 출장소장 이러한 사람들에게다가 책임을 묻지 이러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것인데 이 기류의 내용이라고하는 자체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하나의 국가사무에 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이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관장한 구청장이 호적상으로 관장하고 있지만 책임 관리는 호적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과장을 호적병무에 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감독을 받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호적병무에 있어서 직접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법원이 감독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적병무과장이 여기에 책임 관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구청장이상에 다른 공무원을 물을수가 없는것이 현재의 법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이유로서 이 법리적으로 보아서 어떠한 공무원이나 또는 여기에 어떠한 관계공무원을 징계한다든지 규탄할 하등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사무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고 할것 같으면 서울선거위원회장은 개표구선거위원장의 질의에 의해서 서울시위원회장은 다시 중앙선거위원회장에다가 질의를 해서 중앙선거위원장의 답변에의해서 처리된것이기 때문에 투표의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지않은가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생각할

수있는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 투표를 했다거나 이중으로 주소를 가졌다거나하는 문제는 거기에 상당한 증거가 있기전에는 다시 본회의에서 규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석에 앉아서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것을 결부시켜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불법과 모순을 생각할수있는것입니다마는 냉정한 입장에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또한 합법적으로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정당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했다고 저는 규정을하고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합법적 수단을 청구했다고하는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것이나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하나의 지성인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이지만 법제도에 비추어가지고 어떠한 공무원이나 어떠한 관계자를 규탄한다고 하는것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려둡니다.

○부의장 이중구; 그러면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김재광 의원; 본 조사보고에 의거한 이 ○처리 심의에 있어서는 본 안건을 긴급한 의제로서 제안한 본의원으로서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발언을 삼가려고 해왔던것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 당초에 역시 이 형편이 차차 점차적으로 거리가 달리하는 까닭에 부득이 발언을 요청해서 발언을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로 반공애국청년 제위에게 는 본인과 더불어 이 문제에 관련되었다는 이 사실을 내 나

쁘게 생각하며 또한 불행이라고 하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네들이 살고있다는 성암동산의1번지에 대한 그 자체를 언급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이의안을 제출한 동기가 확실히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것인가 하는것은 고사하고 적어도 서울시라고 하는 자치단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는 표본 권리가 유린되었다는 이와같은 사태를 앞으로 국가의 국시인 민주주의를 허러져버리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본의안을 제안했던것입니다.

각별히 본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조사의요지가 각급 공무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법을 이탈하고 또 배반하는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생각아 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만일에 이와같은 처사를 묵인내지 조장 은폐 은닉한다고 하면 앞날에 이나라의 정치는 큰 위험이 오는 까닭에 우리는 이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으면 안될 우려에 처해 있는것입니다.

또한 핵심이 되는 동적부에대한 기재 기류에대한 등재 이 것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아까 강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증거를 삼기 위하여 성암동을 택하고 거기 동적에 기류부에 올렸다고하면 응당 이것은 수궁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소라고 하면 그정의는 생활에 근거를 가진 사람이래야만 주소를 정할수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못할 사실일것입니다.

더욱 민의원 선거법을 보면 60일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투표권을 행사할수있는 규정이 되어있는것입니다.

또하나 아까 신사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구청장으로하여금 隸下 각동장 반장 통장에게 60일이상 살고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일이 확실한 주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흔적이 거기에 실려있는것입니다.

또한 시선거위원회나 중앙선거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했던것입니다.

역시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확실히 이와같은 답변이 왔던것입니다.

60일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로서 선거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줄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중대한사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인것입니다.

본적지 호적을 가지고 기류지에 기류해놓고 주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사람이 그지역내에 있어서 사실상에 있어서 60일이상 살고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거권자로서 인정할수 없는것이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될수없는것입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여러선거인 명부에 기재된까닭에 이사람이 투표권을 인정했던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나는 앞으로 오는 선거행정에 있어서 영향이 미치지않는것입니까?

왜 애당초에부터 의회는 그 종업원들이 동제규칙을 준수하고 민의원선거법을 준수하고 기타 기류계 또는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무를 진행해야 되는것입니다.

이는 선거권자로서 인정을 합시다라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수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행정을 나는 분석할것이며 만일에 이 행위를 우리가 밝히지못한다고하면 이나라의 복지와 국가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의정치에 우려할바 적지않다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저는 어디까지나 이 당무자에대한 그범법 행위와 그당시 사무 태만으로 일어난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정신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것입니다.

국가 역시 저는 이번 국가 공무원법이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것입니다.

그 공무원법 스스로가 범법행위를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이런것을 우리가 생각할적에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그 위치를 보장받은것이 국가가 정하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보장받는것은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법률 또한 헌법이 정한 그 헌법을 스스로 유린하고 이 범법을한다고 하면 이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되고 앞날은 암담할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희망하기를 법의 질서를 유지해 줄것을 우리는 희망했던것입니다.

자기네가 그 위치를 이용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유린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이와같은 착각을 이끄는 공무원들을 만약에 방임한것에 대하여 을 서슴치 않고 국가의 이름으로 또한 국



가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 사건이 발생한 성암동 금화국민학교 사건등 여기에 역시 불법이 명확하게 조사보고서에 나타난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이것을 조작하고 은폐하기위하여 이 사실을 은닉한다고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전도가 염려가될것입니다.

이단상에 올라와서 여기에대한 소감을 표현한다면 적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모름지기 우리는 이 문제를 만천하에 공개치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법 행위는 그들에 대하여 엄단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각별히 그 사실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와같은 문제자체를 결부시켜서 논의된다고 하면 자연히 보고에대한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었다고하는 이와같은 힐난을 받는가하면 이와같은 처사에 우려할점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안했던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현재 保答中에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말씀드리는데는 시민증발급에 있어서 아까 당 해구청장이 언명하기를 동회를 경유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것 옳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동회에서 경유한 숫자 보다는 발행수가 많다는 이 사실은 나는 아마 서대문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회를 경유해야만되고 그다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것으로 나는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면으로 보아서 근본 의제에있는 처리방안에 의해서 우선 동정 규칙 제3조 제5조 제12조에 의해서 이와같은 당해 공무원들에대해서 직무 유기내지 사무태만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관계 공무원들은 공무원 37조 동45조 교육법 제27조 동36조 민선법 제50조동78조 151조에 의하여 징계 할것을 찬성하면서 내려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중구; 여기에 두분이 있는데 토론을 종결하는것이 좋다고생각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여기에 원의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리안이 들어왔는데 서울특별시는 선거위원장대법관에게 보고한다를 삭제하는것이 좋을것같은데……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성암동 유령인구 기재의건인데 서대문구청장 이명세의 7명 금화국민학교장 최병용외2명을 공무원법 37조및45조 교육법27조 33조 민선법 제50조 78조를 적용해서…… 본건은 인사문제이기때문에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갑수의원 김재순의원 나와서 수고했어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이렇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부」를 지워버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가」를 지워주세요.

(「규칙이요」하느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동장은 선거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투표에 들어갑니다.

(16시 47분 투표개시)

○부의장 이중구; 투표 안하신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표는 끝났습니다.

(17시 53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 투표매수 40매틀림없습니다.

무표된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찍고 부는○표를 했습니다.

무효로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부쪽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느이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가19 부19 무효 2 미결이올시다.

재차 투표로 드러가겠습니다.

제2차 투표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특별히 주의해주십시오. 가면 가 부면 부 확실히 하셔야지 「○」(동그라미)를치지 마십시오.

특히 「잉크」에 주의해주십시오.

인사문제니까 특별히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종료)

투표에 누락된분 없습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 투표매수 39이상없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 가20 부19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결로 산회하겠습니다.

(18시 10분 산회)

---